

연구보고서

2024

11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한 보장상품 가입 방안

강성호·이소양·임석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목 차

• 요약	1
I. 서론	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II. 장수리스크와 고령 보험수요	6
1. 장수리스크의 증가	6
2. 고령 보험수요 현황 및 평가	9
3. 소결	17
III. 퇴직연금 운용 규제 및 평가	20
1. 퇴직연금 운용 규제 및 한계	20
2. 퇴직연금 운용 현황 및 운용 방법 변경 가능성	26
IV. 주요국의 퇴직연금 운용과 시사점	34
1. 호주	34
2. 미국	46
3. 일본	55
V. 결론 및 정책 제언	62
1. 결론	62
2. 정책 제언	64
• 참고문헌	66

표 차례

〈표 II-1〉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추이	7
〈표 II-2〉 고령 추정치매환자 연령별 추이	8
〈표 II-3〉 생명보험 가입 목적(복수응답)	10
〈표 II-4〉 의료비용 대책 충분성	10
〈표 II-5〉 향후 자신의 노인간병 및 가족간병에 대한 염려 및 대비 정도	11
〈표 II-6〉 최근 가입한 생명보험	12
〈표 II-7〉 경제적 노후준비 못하는 이유/1순위	15
〈표 II-8〉 생명보험 해약/효력상실 여부 및 이유(복수응답)	16
〈표 II-9〉 해약 보험 종류(복수응답)	16
〈표 II-10〉 보험금 수령경험 및 사유(복수응답)	17
〈표 III-1〉 퇴직연금 운용 방법의 주요 원칙	20
〈표 III-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 및 기준	21
〈표 III-3〉 퇴직연금의 투자금지 대상 금융상품과 투자한도	22
〈표 III-4〉 저축성보험 vs. 보장성보험	23
〈표 III-5〉 개정 전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 비교	24
〈표 III-6〉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 비중	25
〈표 III-7〉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한도 변화 및 보장성보험 편입 여부	25
〈표 III-8〉 퇴직연금 적립금 및 수익률 추이	27
〈표 III-9〉 연도별 운용 방법별 연간 수익률 추이	28
〈표 III-10〉 연도별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이전 및 해지 현황	29
〈표 III-11〉 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30
〈표 III-12〉 업권별 연간수익률 현황(2023년)	31
〈표 III-13〉 인출사유/성/연령별 중도인출 현황(2022년)	33
〈표 IV-1〉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유형별 규모(2023년 6월)	35
〈표 IV-2〉 호주 퇴직연금의 투자 유형	36
〈표 IV-3〉 호주 슈퍼펀드(Super funds)의 생명보험(Life insurance) 제공 유형	37
〈표 IV-4〉 호주 슈퍼펀드의 보장성보험 포함 시 장단점	38
〈표 IV-5〉 호주 퇴직연금의 보험 종류별/기금 형태별 가입자 계좌 수 추이	41
〈표 IV-6〉 호주 퇴직연금 기금 형태별 단체보험 보험료 추이	43
〈표 IV-7〉 호주 퇴직연금의 보험 종류별 지급 건 및 지급보험금 추이	44

〈표 IV-8〉 호주 퇴직연금 보험료의 계좌당 환산액	45
〈표 IV-9〉 호주 퇴직연금 자산의 보장성 보험상품 구입 가능성과 특징	46
〈표 IV-10〉 미국 퇴직연금(DB형) 투자자산 및 운용 규정 관련 주요 내용	47
〈표 IV-11〉 401(h)와 HSA의 차이점	49
〈표 IV-12〉 미국 퇴직연금 유형별 건강보장 및 보장성보험 투자 비교	50
〈표 IV-13〉 미국 퇴직연금 유형별 건강보장 및 보장성보험 투자 비교	52
〈표 IV-14〉 연금제도의 유형 및 자금조달 방법별 자산 규모(2021년 기준)	53
〈표 IV-15〉 미국 퇴직연금 자산의 보장성보험 구입 가능성과 특징	54
〈표 IV-16〉 일본 퇴직연금 유형별 규모(2022년 기준)	56
〈표 IV-17〉 일본 퇴직연금 유형별 보장성보험 구입 여부	56
〈표 IV-18〉 일본 DC형 퇴직연금의 투자상품 선택 추이	59
〈표 IV-19〉 일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보험상품 선택 상황(2022년)	59
〈표 IV-20〉 일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예·적금 선택 상황(2022)	60
〈표 IV-21〉 퇴직연금 자산의 보장성 보험상품 구입 가능성과 특징	61
〈표 V-1〉 주요국의 퇴직연금 자산의 보장성보험 편입 여부 및 특징	63

그림 차례

〈그림 II-1〉 고령화 추이	6
〈그림 II-2〉 65세 기대여명 변화 추이	6
〈그림 II-3〉 연령별 1인당 평균 진료비(2022년)	7
〈그림 II-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추이	8
〈그림 II-5〉 연령대별 생명보험 가입률 추이	13
〈그림 II-6〉 연령대별 생명보험 추가 가입 의향	13
〈그림 II-7〉 연령별 소득유형별 소득원 비교(2022년 기준)	14
〈그림 II-8〉 연령별 빈곤율 추이	15
〈그림 IV-1〉 호주 퇴직연금 단체보험의 보험요율 적용 예시	42
〈그림 IV-2〉 일본 DB형 퇴직연금 운용자산 1),2) 구성비 추이	58

Strategies for Utilizing Retirement Pension Reserves to Purchase Guaranteed Insurance Products

This study aims to strengthen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and improve old-age income security by incorporating guaranteed insurance products into the management of retirement pension reserves. The research evaluates the current insurance demand among the elderly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tirement pension regulations. With increasing longevity risk due to an aging population, insurance products can provide an effective response, especially when liquidity is insufficient. Utilizing retirement pension reserves for guaranteed insurance is shown to enhance potential returns, reduce fund outflow, and improve long-term retention rates.

The study reviews cases from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including guaranteed insurance within retirement pensions. Australia mandates pension providers to offer group insurance covering death and disability benefits. The United States allows 401(h) accounts to be established using surplus DB pension funds for healthcare expenses. Japan's Savings-type Accident and Death Insurance permits the inclusion of savings-type insurance for accident and death coverag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incorporating guaranteed insurance into retirement pensions, gradually expanding its use, and reducing the proportion of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This approach will not only enhance the risk management of retirement pensions but also provide comprehensive financial protection for retirees.

본 연구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 보험상품을 편입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령층의 보험수요와 현행 퇴직연금 운용 규제 및 한계를 평가하였으며,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장수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을 통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분석되었다. 보장성보험이 포함된 퇴직연금은 잠재수익률을 높이고 적립금 누수 문제를 완화하며 장기적인 보험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는 호주,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퇴직연금에 보장성보험을 도입할 경우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호주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단체보험 형태로 보장성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가입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사망보장보험과 영구장애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DB형 연금의 초과 적립금을 활용하여 401(h) 계좌를 통해 의료비 지출 혹은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퇴직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적립식 상해사망보장보험 형태로 퇴직연금 내 보장성보험을 편입하여 연금 가입자가 장애·사망과 같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장성보험을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단계적으로 포함하고,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뿐만 아니라 장애, 유족 보장 등의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줄이되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운용 방식을 확대하여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장성보험을 통해 연금의 위험 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에 대응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23년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결과 발표를 전후하여 정부, 국회, 학계 등에서 연금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탄생한 국민연금제도가 연금을 수령받기도 채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문제부터 불거져 나온 것이다. 그만큼 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제도 운영에 불리한 구조로 변화했다. 2024년 7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이미 1천만 명을 초과하였고, 조만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미래 생산력의 기준척도로 볼 수 있는 합계출산율마저 올해 말 0.7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성장률도 2% 이하로 곤두박질칠 우려가 있다. 그야말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경제 환경은 국민연금제도를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몰고가는 지경이다. 더군다나 국민연금 구조는 저부담·고급여 체계여서 국민연금은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심지어 역모기지인 주택연금까지 합세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사적연금도 가입의 사각지대, 낮은 수익률 등 연금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 상반기에 이미 400조 원을 초과하였고, 퇴직금을 포함하면 퇴직자산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2024년 4월 말 국민연금 적립금이 1,100조 원 수준¹⁾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퇴직자산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무엇보다 퇴직연금은 2050년 경에는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할 것이라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노후자산 기금될 것으로 예상된다(강성호 2024).

노후소득자산으로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 자산운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2년 4월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퇴기금)와 적립금운용위원회

1) NPS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300인 이상 DB사업장)제도가 시행되었고, 2022년 7월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어 2023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불안정, 지나친 단기투자 운영 등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투자수익률 제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이 요구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의 원인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치중된 자산운용 때문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자산운용으로서 원리금보장상품을 내실화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시행 20년 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의 85% 이상이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을 고려한 자산운용 즉, 건강보장을 포함한 노후생활보장과 관련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구성

현재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은행업의 예·적금, 증권업의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quity-Linked Bond: ELB), 보험업의 금리확정형보험(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 GIC)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보험업의 경우 저축성보험만 포함되고,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갖는 보장성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퇴직연금 감독규정, 제8조의3). 즉, 보장성보험은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 보험상품(예: 건강, 요양보험상품)일지라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투자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보장성보험의 배제가 이론적, 절대적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2012년 12월 이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이후 즉,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호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퇴직연금 투자상품으로 원리금보장상품에 보장성보험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보장성보험을 편입할 경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보장성보험을 운용 방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일부 선행연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류근식·강성호(2017)는 일본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투자대상 상품으로 건강보장 가미형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노후소득과 건강보장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특히, 동 연구에서는 일본 동경해상, 손보재팬, 아이오이 손해보험은 'DC형 적립상해 보험' 제공을 통해 가입자의 상해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소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보험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고령사회를 대응하는 방안으로 보았다. 이경희(2018)는 호주 퇴직연금 제도의 지배구조인 기금형에 주목하면서 디폴트 투자옵션과 디폴트 보장옵션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기금선택제, 디폴트 투자상품(MySuper) 도입 등을 통해 운용 수익률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보장옵션으로 수탁자의 의무적 단체보험상품 제공을 소개하였다. 특히, 이경희(2018)는 호주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의무적으로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함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유사한 형태의 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대환·손성동(2022)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응한 생명보험 산업의 대응 전략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보험을 포함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투자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보장성보험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선행 연구들의 경우도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보험을 포함하는 사례를 소개할 뿐 현황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세부적 검토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보험의 포함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현 고령층의 보험수요의 충분성 여부를 평가하고, 현행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검토한 후 해외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층 보험수요의 충분성 평가와 관련하여, 현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상품으로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기에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고령화에 따른 장수리스크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령층의 노후준비와 보험수요를 평가한다.

둘째, 현행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보험이 제외된 이유를 검토하고, 제외의 실의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현행 퇴직연금 운용 방법의 내용 및 특성, 변천 과정 등을 검토한 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평가한다.

셋째,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보험을 허용하는 해외사례를 찾고 제도적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호주, 미국, 일본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위 내용을 반영한 본 연구의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장수리스크 변화와 고령층 보험수요의 충분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3장에서는 퇴직연금 운용 규제 및 현황 등을 검토한 후 평가한다. 제4장은 보장성보험을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호주, 미국, 일본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 제언으로 마무리한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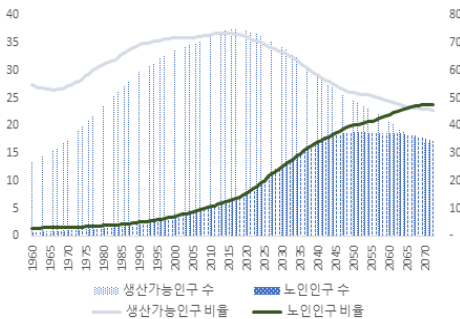
장수리스크와 고령 보험수요

1. 장수리스크의 증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장수화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2024년 7월 1천만 명을 초과(고령화를 19.2%)하였고, 2025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을 전후하여 고령인구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 II-1〉 참조). 한편, 65세 기대여명은 여성 기준으로 1970년 14.9년에서 2022년 22.8년으로 52년 동안 7.9년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 이미 OECD 고령자의 평균 기대여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한 장수화가 진행되고 있다(〈그림 II-2〉 참조).²⁾

〈그림 II-1〉 고령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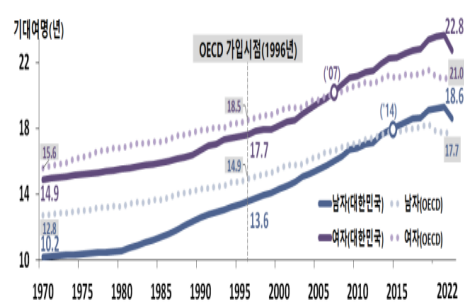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명, %)



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요 인구지표

〈그림 II-2〉 65세 기대여명 변화 추이

(단위: 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3. 12. 1), "2022년 생명표 작성 결과"

노인인구 수의 증가와 급속한 장수화는 추가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생산가능인구와 합계출산율의 감소까지 겹쳐 사회적 노후준비는 더욱 취약할 것으로

2) 한편 동기간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970년 10.2년에서 2022년 18.6년으로 52년 동안 8.4년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OECD 평균을 초과함

예상되므로 장수리스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수리스크를 노인인구 수와 기대여명을 곱한 (가칭)고령시장면적³⁾ (노인인구 수×기대여명)으로 살펴보면, 고령시장 면적은 2023년 5,415(=950명×5.7세)이 되고, 이는 2030년에 1.5배, 2050년에 1.8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대여명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동일 수준의 노후준비를 유지한다면, 장수리스크는 2023년에 비해 2030년에 0.5배, 2050년에 0.8배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장수리스크는 건강과 관련하여 의료비 부족 현상(건강리스크)으로,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노후소득의 부족(소득리스크)으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건강리스크를 살펴본다. 2012~2022년 동안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인 유병기간은 15.17~16.9년(최고 18.3년)으로 추정된다. 동 기간 기대수명은 80.87년에서 82.70년으로 1.83년 증가하였으나, 건강수명은 65.7년에서 65.8년으로 0.1년 증가에 그쳐 유병기간은 1.7년 증가하였다. 이러한 유병기간의 증가는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2022년 1인당 진료비는 65세를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494만 원)는 전체 평균(200만 원)의 2.5배여서 현재의 고령화 정도에도 부담수준이 높은 편인데 향후 고령화의 심화는 의료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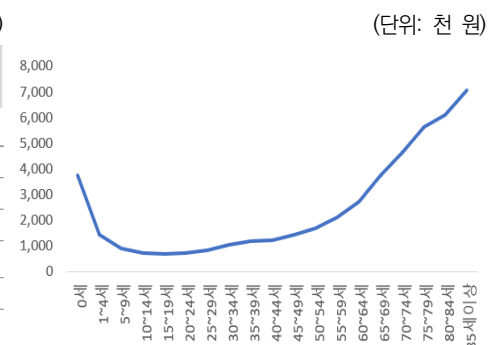
〈표 II-1〉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추이

(단위: 세)

연도	기대수명(A)	건강수명(B)	유병기간(A-B)
2012	80.87	65.70	15.17
2014	81.80	65.20	16.60
2016	82.36	64.90	17.46
2018	82.70	64.40	18.30
2020	83.50	66.30	17.20
2022	82.70	65.80	16.90
(2022~2012)	(1.83)	(0.1)	(1.73)

자료: 지표누리 홈페이지

〈그림 II-3〉 연령별 1인당 평균 진료비(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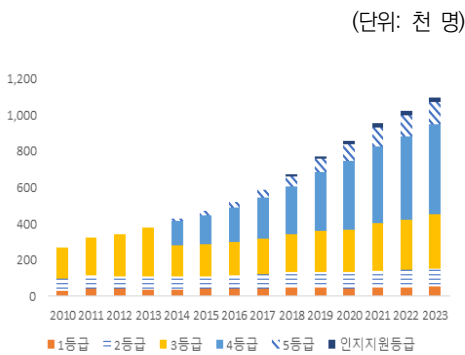
자료: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

3) “고령시장면적”은 고령화율과 기대여명을 동시에 고려하여 고령시장 규모를 설명하는 개념임. 기존 연구들은 두 요소를 개별적으로 다루어 고령화와 장수화가 결합된 고령시장 크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4)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

이러한 고령화 심화는 후기노인인구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요양보험등급 인정자와 치매환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수는 102만 명으로 전체 고령인구(938만 명)의 10.2%였다. 또한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 수는 2017년 70.5만 명, 2021년 88.6만 명이나 2024년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베이비부머의 후기노인 과정에서 2050년경 3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의료비 부담 증가 외 요양 부담의 폭발적 증가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림 II-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추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표 II-2〉 고령 추정치매환자 연령별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전체	65~74세	75~79세	85세 이상
2017	705	99	375	231
2018	751	103	396	252
2019	794	107	412	275
2020	840	114	423	304
2021	886	120	432	334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2023)

다음으로 소득리스크를 살펴본다. 기대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퇴직 후 노후생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추가적 노후준비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비건강자(유병기간)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외 건강자 및 비건강자 모두의 노후생활을 영위할 추가적 노후소득을 요구한다. 앞의 유병기간의 증가가 의료비 증가를 의미한다면, 기대여명의 증가는 추가적 노후소득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령자의 소득리스크는 앞서(가칭)고령시장면적을 고려하면, 동 면적의 증가수준을 추가적으로 충당해 내지 못할 경우 고령사회의 소득리스크는 증가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

향후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45년에 일본의 고령화율을 초과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장수리스크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고령시장 규모가 증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강성호·김혜란(2019)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규모로 본 우리나라 고령시장 규모를 추정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령시장은 현재보다

2~4배 수준⁵⁾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장수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고령시장의 확대와 시장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구입할 경우 장수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관련하여 현재 고령층 보험수요의 충분성에 대해 검토한 후 등 전략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령 보험수요 현황 및 평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장수화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장수리스크를 증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장수리스크의 대응 수단으로 우리나라 고령자의 보험수요 현황을 살펴본다.

최근 가입한 생명보험의 가입 목적은 ‘의료비 보장’이 75.8%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생활 보장(44.3%)’, ‘일시적 소득 상실 대비(17.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⁶⁾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 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이 높았다는 점에서 퇴직 후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가족생활보장, 소득상실 대비, 노후생활보장 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노후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들 항목의 단순 비중 합도 60세 이상에서 70%(41.7%+20.6%+9.9%)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의료비와 노후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수요가 퇴직 전후에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5) 강성호·김혜란(2019)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전망에서 2018년에 비해 2050년은 2.5(우리나라 이용자 비율 이용)~4.5배(OECD 이용자 비율 이용)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6) 분석 내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생명보험협회(2023)의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를 주로 활용함

〈표 II-3〉 생명보험 가입 목적(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사례 수	(1,564)	(24)	(204)	(397)	(534)	(403)
의료비 보장	75.8	90.6	72.4	75.2	72.4	81.6
가족생활보장	44.3	19	47.2	45.6	45.3	41.7
일시적 소득 상실 대비	17.4	19.5	16.8	15.6	16.4	20.6
노후생활보장	8.6	16.4	7.8	5.5	9.8	9.9
자녀의 교육, 결혼자	2.2	0	3.7	2.8	2.4	0.5
세금혜택받기 위하여	1.3	7.6	0.7	1.1	2.1	0.2
재산상속편의를 위하여	0.4	0	0.7	0	0.5	0.3
주택, 부동산 준비수단	0.1	0	0	0.2	0	0

자료: 생명보험협회(2023)

그렇다면 가족의 질병 발생 시 의료비용 대책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조사대상자 전체 중에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로 낮았으며, 연령별로 60세 이상 가구주는 7.9%만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았다. 반면 의료비용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44.3%로 높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40~49세' 가구주에서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45.7%)', '50~59세(42.8%)'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40대 가구주가 의료비용에 대해 가장 높은 불충분성을 느끼는 것은 자녀, 자신, 노부모에 대한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고려와 같이 해당 연령대의 특성 때문으로 이해된다. 전반적으로 의료비용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중고령층은 현실적으로 추가적 노후준비의 기회가 적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4〉 의료비용 대책 충분성

(단위: %)

구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사례 수	(2,000)	(43)	(272)	(467)	(585)	(633)
충분하다	9.0	12.3	10.0	8.2	10.0	7.9
충분치 않으나 염려하지 않는다	42.6	46.2	45.6	39.6	43.3	42.7
불충분하다	44.3	32.4	36.5	49.8	42.8	45.7
만일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4.1	9.1	7.9	2.4	3.9	3.7

자료: 생명보험협회(2023)

한편, 변혜원·오병국(2024)⁷⁾은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노인간병에 대한 걱정은 많으나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 분석에 의하면, 노인간병 필요기간은 평균 6년으로 보고 있으나, 의료비 부담과 노후준비 부족으로 충분한 간병수요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 II-5〉 향후 자신의 노인간병 및 가족간병에 대한 염려 및 대비 정도 (단위: %)

구분	필요 가능성에 대한 염려		필요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	
	걱정하지 않음	걱정함	준비하지 못함	준비함
자신의 노인간병	27.2	72.8	67.9	32.1
가족간병	22.6	77.4	63.9	36.1

자료: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이는 의료비용과 간병비용의 불충분한 준비가 건강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의료비용 및 노후생활비 충당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질병보험'이 42.8%로 가장 많았고, '실손의료보험(22.7%)', '상해/재해보험(16.6%)', '사망보장보험(6.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볼 때 구입한 보험상품 유형에 큰 차이는 없으나, '60세 이상'에서 질병보장보험 가입률이 49.7%로 조사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앞서 생명보험 가입 목적에서 의료비 충당이 가장 높았다는 점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60세 이상에서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비중은 19%로 낮는데, 이는 갱신형에 따른 부담증가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는 고령기에 질병보장보험이 가입/유지부담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을 대체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고, 또한 상해/재해보험, 사망보장보험보다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이해된다.

7) 변혜원·오병국(2024)

〈표 II-6〉 최근 가입한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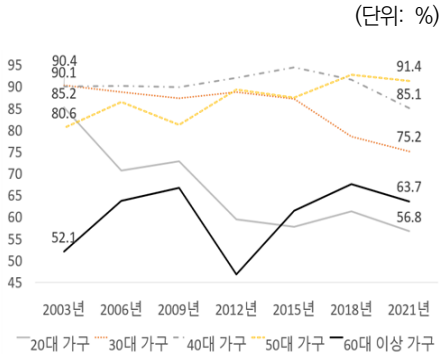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사례 수	(1,564)	(24)	(204)	(397)	(534)	(403)
질병보장보험	42.8	26.5	42.1	41.6	39.5	49.7
실손의료보험	22.7	48.1	28	25.8	19.9	19.0
상해/재해보험	16.6	10.2	13.5	15.3	19.3	16.1
사망보장보험	6.2	9.8	5.2	8.8	6.3	3.9
연금보험	4.3	5.4	5.3	3.7	5.4	2.8
장기간병보험	3.4	0	0.4	1.3	5.1	5.0
변액보험	2.7	0	1.5	2.3	3	3.3
저축성보험	1.4	0	4.1	1.1	1.5	0.2

자료: 생명보험협회(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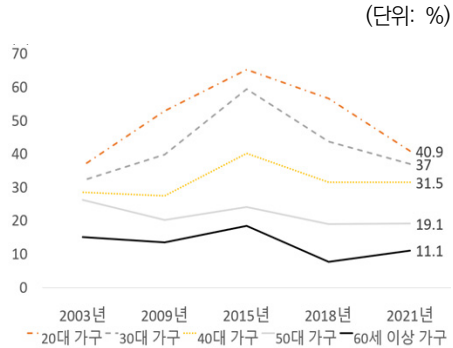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에 대해 가입률 추이와 추가가입 의향을 살펴본다. 2021년 기준으로 연령별 생명보험 가입률은 20대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60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21년 동안 20대 가구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진 반면 60세 이상 고령가구는 2012년 이후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이후 20대 가입률을 상회하였다. 이를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 기간 젊은 층인 20대, 30대, 40대는 감소를, 50세 이상 중고령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동 기간 50대는 80.6%에서 91.4%로, 60대 이상은 52.1%에서 63.7%로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II-5〉 참조). 이는 중고령층이 고령화·장수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장수리스크를 대비하여 스스로 준비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5〉 연령대별 생명보험 가입률 추이



자료: 생명보험협회(2023)

〈그림 II-6〉 연령대별 생명보험 추가 가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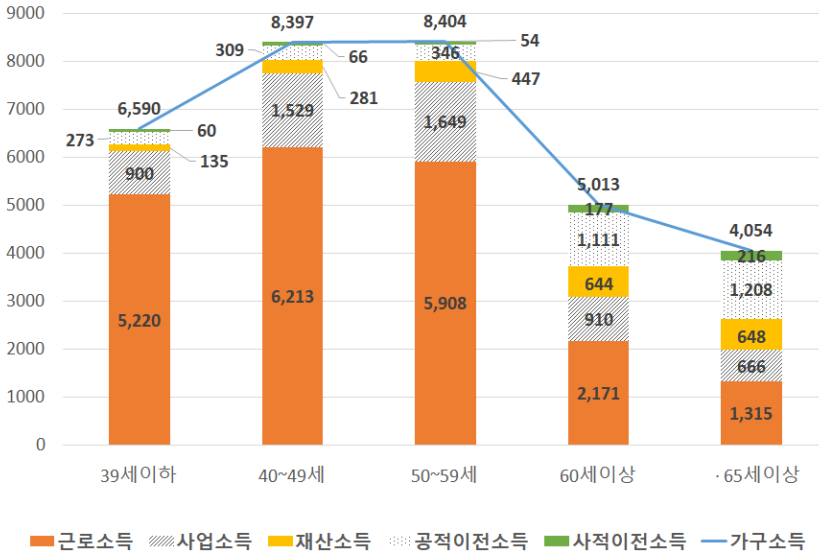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2023)

한편, 연령대별 추가가입 의향을 보면 20~40대에 비해 중고령층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2023년 동안 50대는 26.3%에서 19.1%로, 60대는 15.2%에서 11.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II-6〉 참조). 이는 중고령층인 5, 60대가 장수리스크를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미리 늘려왔기 때문에 추가 가입 유인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추가 가입 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가입(납부)을 더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아마도 후자에 따른 이유가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어느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살펴볼 문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추가 가입의 유인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고령층 유동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가구소득 수준의 변화를 비교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림 II-7〉은 연령별로 구분하여 가구소득을 소득원별로 보여주고 있다. 2022년 가구소득의 평균은 6,76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50대(8,404만 원)가 가장 높다가 퇴직세대인 60세 이상 가구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가구 소득원의 중심이 근로소득인데, 이러한 근로소득은 퇴직과 동시에 급감하므로 퇴직가구에서 가구소득이 급속히 감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65세 이상의 가구소득은 전체 평균의 60% 수준에 그치고 그만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7〉 연령별 소득유형별 소득원 비교(2022년 기준)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3. 12. 7),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이렇게 중고령 가구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연금, 보험 등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에 충분히 가입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여명 증가로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노후자산을 축적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 노후자산 부족에 따른 빈곤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보험연구원 설문조사⁸⁾에 따르면 중고령층인 50대에서 노후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55.4%⁹⁾였고,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소득부족(67%), 자녀교육비(14.0%), 담보대출 상환부담(10.3%)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 이후 빈곤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을 보면 65~75세 30.5%, 75세 이상 51.5%로 나타난다(〈그림 II-8〉 참조).

8) 변혜원·손지영(2021)

9) 전혀 준비 못함 10.4%, 잘 준비하고 있지 못함 45%

〈표 II-7〉 경제적 노후준비 못하는 이유/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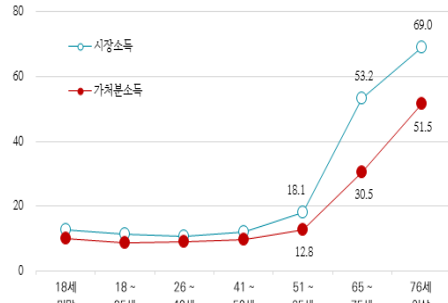
구분	소득 적음	담보 대출 ¹⁾	자녀 교육비	기타 ²⁾
전체	67.6	12.8	9.6	10.0
20대	81.2	6.3	0.7	0.0
30대	67.0	16.7	5.6	11.9
40대	63.1	13.0	14.2	10.8
50대	67.0	10.3	14.0	9.6

주: 1) '전세나 내집마련을 위한 담보대출 상환부담'
 2)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여행이나 쇼핑 등 지출이 많음' 등

자료: 변혜원·손지영(2021)

〈그림 II-8〉 연령별 빈곤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3. 12. 7), "202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이러한 유동성 부족과 노후빈곤 문제는 보험의 해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2023)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9년 이후) 생명보험의 중도해약 및 효력 상실률은 6.5%였으며, 50대가 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해약/해지율이 낮은 것은 퇴직 전에 이미 필수 보험만 남기고 해지하여 추가적으로 해지할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의 해약/해지 이유를 보면, 중고령층인 50·60대의 경우 보험료 납부가 어렵거나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 비율이 거의 70%에 다다른다. 이는 중고령 가구에서 경제적 부담,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보험수요를 줄이거나 포기하고 있음을 추론케 한다.

〈표 II-8〉 생명보험 해약/효력상실 여부 및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해약/해지율		6.5	4.8	4.1	8.1	8.3	4.8
해지 이유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32.8	0	20.5	28.2	37.0	38.7
	목돈 필요	28.9	0	11.9	30.9	31.9	29.9
	보험납부 기간이 길어서	19.2	0	33.7	6.6	24.1	23.2
	주소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14	0	42.5	15.7	15.4	0
	설계사의 말과 내용이 달라	14.2	100	9.7	13.3	14.2	11.4
	의리상 어쩔 수 없이 가입	13.2	100	8.6	10.3	12.2	14.3
	소액보험이라 역할이 없어서	11.8	0	0	9.1	19.2	8.6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해서	7.2	0	12	1.7	13.2	3.2
	기타	2.4	0	5.6	0.9	1.2	5.3
	모름	0.2	0	0	0	0	1

자료: 생명보험협회(2023)

해약되는 보험의 대부분은 질병, 사망, 상해 보험 등 제3보험, 즉 보장성 혹은 고령특화 보험들로 장수리스크에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는 보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수요의 축소 및 해약은 보험사고 발생 시 상당한 위험을 초래시킬 수 있다.

〈표 II-9〉 해약 보험 종류(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사례 수	(130)	(2)	(11)	(38)	(49)	(30)
질병보장보험	24.6	100	57.0	24.1	18.0	18.7
사망보장보험	21.0	0	21.3	11.5	32.2	16.5
상해/재해보험	20.0	0	15.6	18.9	10.5	39.8
변액보험	14.0	0	0	13.3	20.7	10.3
연금보험	11.8	0	0	10.1	14.8	14.1
저축성보험	8.3	0	6.1	18.6	3.3	4.8
실손의료보험	5.0	0	0	5	7.2	3.6
장기간병보험	3.0	0	0	1.8	5	2.5
모름	0.6	0	0	0	0	2.7

자료: 생명보험협회(2023)

생명보험협회(2023)에 의하면, 2019~2021년 동안 만기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15.4%였다. 이 중 50대가 19.4%, 60세 이상이 16.3%로 중고령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험금 수령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험금 수령 사유별로 보면, '상해·재해'가 64.3%로 가장 높았고, '일반질병(30.2%)', '중증질병(6.6%)', '만기(5.8%)' 등의 순이었다. 60세 이상의 경우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나 중증질병의 경우 16.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고령층이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을 해약할 경우, 이후 보험사고는 중고령층이 젊은 층에 비해 높으므로 중고령층의 리스크는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이다.

〈표 II-10〉 보험금 수령경험 및 사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수령 경험		15.4	4.0	9.2	14.6	19.4	16.3
수령 사유	상해·재해 사고	64.3	51.8	91.5	73.2	57.5	58.3
	성인병 및 일반질병	30.2	21.5	10.4	23.2	38.2	31.3
	중증질병	6.6	26.6	0	0	4.6	16.5
	만기	5.8	0	0	3.7	7	7.7
	해약·효력 상실	1.6	0	0	3.9	1.8	0
	사망 또는 장해진단	1.5	0	0	0.9	0.7	3.6

주: 전국 2,0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수령 경험가구는 309가구로 조사됨
 자료: 생명보험협회(2023)

3.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담보대출 등으로 준비된 노후자산은 축소되고, 고령화·장수화로 인해 추가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즉 노후자산의 누수분과 추가 필요분으로 인해 향후 장수리스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고에서는 장수리스크의 증가에 따른 대응 수단으로 고령층 보험수요에 대해 살펴 보았고, 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고령층의 보험수요는 제3보험 중심으로 가입할 유인이 높다. 이는 최근 생명보험 가입 목적으로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고, 실제로 가입한 보험도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재해보험 등 제3보험의 보장성보험 중심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하여 제3보험의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유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시장의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퇴직 전후 세대인 중고령층은 해약/해지 비율이 높고, 수령 경험 비율도 높은 양극화 경향을 보인다. 중고령층에서 해약/해지율이 높은 것은 유동성 문제와 관련된다. 물론 생애기간에 걸쳐 유동성이 풍부한 시점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퇴직 전후에서 유동성 제약이 더욱 강하게 나고 있다. 이는 50세를 전후하여 노후준비 필요성은 증가하나, 자녀교육비, 담보대출 상환부담 등으로 인해 준비된 노후자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퇴직 전후 시점에서 상해·재해, 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는 비율도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고령층은 해약/해지 혹은 수령을 동시에 경험할 확률이 높으므로 해약/해지 후 보험사고 발생 시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고령층이 유동성 제고를 통해 해약/해지 비율을 낮추고 보험 만기까지 충분히 가입하여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및 시장의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기대여명 증가, 노후소득부족 등 장수리스크 우려를 고려할 때 고령층의 현재 확보된 보험수요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으로 장수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노후자산 축적이 요구되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후보장 보험상품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김규동(2024)¹⁰⁾에 의하면, 사망률 개선은 건강하지 않은 수명 증가로 이어져 노후 의료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수요 강화 등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변혜원·손지영(2021)¹¹⁾에 의하면 연령별 보험수요는 소득부족 등의 이유로 불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50대와 60대 퇴직시점을 전후하여 보험가입이 급감하는 것은 보험수요의 필요성이 감소한 것이라기보다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증가로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장수리스크에 대비하여 고령층의 보험수요를 지키고 노후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고령층의 유동성 제고가 요구된다. 팍팍한 현실에서 어디에도 별도의 유동성을 만들어 내기

10) 김규동(2024)

11) 변혜원·손지영(2021)

는 쉽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가용할 수 있는 유동성으로 이해된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 원에 육박하지만 적극적 운용지지도, 높은 수익도 보장하고 있지 못한 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의 85%인 340조가 원리금보장상품에서 잠자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제 보험업의 특징 중 하나인 보장성보험을 통해 원리금보장상품의 장점을 일깨워낼 시점이다. 이에 현행 퇴직연금 운용 방식으로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규제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퇴직연금 운용 규제 및 평가

1. 퇴직연금 운용 규제 및 한계

가. 퇴직연금 운용 근거 및 규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5가지 원칙을 따르도록 설정하고 있다. ①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취득과 이해가 쉬워야 하고, ② 운용 방법 간 변경이 쉬우며, ③ 운용 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하고, ④ DC형과 IRP형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⑤ 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분산투자 등의 운용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과 ‘분산투자 운용 방법과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다. 원리금보장 운용 방법과 분산투자 운용 방법과 기준은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서 설명되고 있다.

〈표 Ⅲ-1〉 퇴직연금 운용 방법의 주요 원칙

구분	주요 내용
용이성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취득과 이해가 쉬워야 함
전환성	운용 방법 간 변경이 쉬워야 함
투명성	운용 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해야 함
안정성	DC형과 IRP형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분산투자	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분산투자 등의 운용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함

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함

퇴직연금 시행령 제25조는 사업자가 DC형과 IRP형 운용 방법(운용 상품)의 하나인 원리금보장 운용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예·적금, 보험계약,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예탁금, 우체국예금, 채권,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이다. 한

편, 퇴직연금 시행령 제26조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든 투자가능 상품 인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운용 방법)과 운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III-2) 참조).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보험계약은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장성 보험은 원리금보장상품에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표 III-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 및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예금·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보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예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 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사회기반 시설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 방법

자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퇴직연금에서 분산투자 운용 방법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자산운용 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적립금이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자산의 편입 비중을 70% 이하로 제한하는 ‘총위험 자산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자산이 지나친 위험으로부터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적금, 금리확정형보험(GIC), ELB,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주식 편입 비중 40% 이하), 적격TDF, 디폴트옵션 상품은 DC, IRP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

나,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주식 편입비중 40% 초과)는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¹²⁾ 이를 고려하여 퇴직연금의 투자금지 대상 금융상품과 투자한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퇴직연금의 투자금지 대상 금융상품과 투자한도

구분		투자금지대상	투자한도
증권	지분증권	비상장 주식, 해외 비적격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	금지
	증권예탁증권	국내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전체 투자 금지	
	채무증권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한도 70%
수익증권	파생형 펀드, 투자부적격등급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모 발행, 최대손실률 40% 초과		
파생상품		위험회피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계약	헷지목적만 가능
실적배당형 보험		수익증권과 동일한 기준 적용	한도 70%

자료: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2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표 III-3>과 같이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가 노후자산 축적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에 공감하나, 고령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보험(예: 고령특화보험)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퇴직연금 감독규정, 제8조의3)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법적 근거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보장성보험 운용 방법 배제 근거와 한계

여기서는 퇴직연금 운용 방법 중 보험계약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즉, 퇴직연금 시행령 제26조에서 제시하는 ‘보험계약’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3에서 그 운용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은 납입보험료의 전액(비용, 위험보험료, 보증수수료 제외)이 적립금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되는 보험계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서 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만 해당

12)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2022)

되고 보장성보험은 포함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 사망보장보험, 제3보험, 단체보장보험 등은 노후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더라도 배제된다.

검토에 앞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에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보장성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 정의한다. 이때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의미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저축성보험 중 연금보험과 변액연금 보험금이 보험료를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종신연금과 투자성연금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저축성보험 vs. 보장성보험

구분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근거
개념	보험료 현재가치 < 보험금 현재가치	보험료 합계액 >= 보험금 합계액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보험: 일반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연금보험 • 생사혼합보험: 유니버설보험, 저축보험 * 변액유니버설보험(적립형), 자산연계형저축보험 • 개인형퇴직연금 (I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 • 제3보험: 상해, 질병, 간병보험 • 단체보장보험 	「상법」 제4편 제3장제2절 및 제3절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7-60조

주: *와 IRP는 특별계정운용상품임(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참조)

자료: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와 생명보험협회(2024), p. 250을 참고하여 정리함

이제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보험이 배제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에는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주요 목표로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도 변경 과정에서 업권 간 이해관계가 고려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전인 2012년 12월 이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보험을 취급할 수 있

었다는 점은, 현행 퇴직연금 목적을 노후소득보장에 국한하지 않고 노후생활보장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당시 삼성화재는 개인퇴직계좌(IRA)¹³⁾에 상해로 인한 사망 시 퇴직금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해사망특약의 형태로 보장성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¹⁴⁾ 동 보험상품은 별도의 특약보험료 없이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형태였으며, 보험금은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에 연동하는 구조로 적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¹⁵⁾

그런데 퇴직연금 상품으로 보장성보험이 출시된 이후 은행업과 증권업에서 반발이 있었고 보험계약에 저축성보험만 포함되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표 III-5〉 개정 전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 비교

구분	개정 전(2012년 12월 이전)	개정 후(2012년 12월 이후)
내용	제3장 적립금의 운용 제8조(원리금보장 운용 방법 취급 금융기관)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4. 7)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 방법의 종류)	제3장 적립금의 운용 제8조의3(운용방법으로서의 보험계약)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이란 납입보험료의 전액(부가보험료 제외)이 적립금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신설 2012. 12. 5)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의 반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도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신설 2012. 12. 5)

자료: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011-19호(개정 전); 제2012-29호(개정 후)를 바탕으로 정리함

이러한 개정 배경에는 당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¹⁶⁾을 금지할 필요성과¹⁷⁾ 업권 간 이해관계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편입 배제가 상호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감독규정 개정 전인 2012년 6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은행 82.7%, 증권 49.7%로 은행, 증권업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시 이러한 과도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은 고금리·역마진 경쟁과 역마진을 보전하기 위한 고율의 수수료 부과 등의 문제를 야기될 수

13)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는 현재 IRP계좌의 전신임

14) 금융경제신문(2010. 12. 13), “삼성화재 퇴직연금과 상해보험 결합”

15) 아주경제(2010. 12. 07),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무배당 상해플러스 개인퇴직계좌보험' 출시”

16) 퇴직연금 도입 시점인 2005년에 신탁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행예금(자기은행예금)을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조항을 두었음

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4. 11. 26),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관련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류건식·이상우 2009; 김재현 2010; 류건식 외 2013).

〈표 III-6〉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 비중

구분	은행	증권
'11년 12월 말	89.0%	55.8%
'12년 6월 말	82.7%	49.7%

주: * 퇴직연금적립금 10억 미만 기업(DB), 부보대상 금액(DC)은 자사상품 100% 편입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2. 11. 28),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이에 금융당국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왔다. 즉 편입 한도는 퇴직연금 제도 시행 후 2011년 12월 이전까지 100% 허용되던 것이 2011년 12월 이후 70%, 2014년 4월 이후 50%, 2015년 1월 이후 30%까지 단계적으로 허용 수준이 낮아지다가 급기야 2015년 7월 이후엔 금지되었다.

〈표 III-7〉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한도 변화 및 보장성보험 편입 여부

기간	'05. 12. 1~	'11. 12. 1~	'13. 4. 1~	'15. 1. 1~	'15. 7. 1~
최대 편입비중	100%	70%	50%	30%	금지
보장성보험 편입 여부	가능		불가능('12. 12. 5~)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4. 11. 26),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관련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참고하여 정리함

그러나 원리금보장상품에서 보장성보험을 배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쉽지 않다. 다만, 당시 퇴직연금 도입 이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기간에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두고 업권 간 경쟁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비중의 축소는 보험업에 비해 은행업과 증권업의 위축으로 비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금융업권 모두가 참여하므로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서 보장성보험이 배제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급여법에서 퇴직연금의 목적을 노후생활보장¹⁸⁾으로 하고 있음에도

18) 퇴직급여법 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의됨

퇴직연금을 노후소득에 초점을 두는 제도로 좁게 해석하도록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권도 타업권과 동일하게 순수 저축 목적의 보험상품만 퇴직연금 운용 상품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동 규정 개정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용 방법의 변경에 따른 별도의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운용 방법 변경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퇴직연금 운용 현황 및 운용 방법 변경 가능성

가. 퇴직연금 운용 현황 및 특징

2023년 말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4조 원으로 연평균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여 최근 5년인 2018년에 비해 2배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 이미 400조 원을 초과하였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퇴직연금은 낮은 운용수익률, 많은 중도인출 및 해지, 낮은 연금 형태의 수령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기대는 그리 높지 않았다. 특히, 퇴직연금은 그동안 수익률 이슈에 간헐적 적립금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자산운용방법 변화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 고에서는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이슈로 자산운용방법으로 보장성보험의 편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수익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퇴직연금은 400조 원에 가까운 적립금을 운용함에도 연간 수익률이 연평균 2% 내외에 머물고, 5년,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도 각각 2.35%, 2.07%여서 장기적으로도 수익률이 높지 못하다. 이는 국민연금이 동 기간 연 환산 수익률이 5~6%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너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표 III-8〉 퇴직연금 적립금 및 수익률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적립금(조 원)	190.0	221.2	255.5	295.6	335.9	382.4
증감률(%)	12.8	16.4	15.5	15.7	13.6	13.8
연간수익률(%)	1.1	2.25	2.58	2.00	0.02	5.26
5년	1.88	1.76	1.85	1.96	1.51	2.35
10년	3.22	2.81	2.56	2.39	1.93	2.07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각 연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5. 16),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 원, 5년간 2배 성장_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

그동안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의 원인을 퇴직연금 자산운용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성적 평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산운용의 불안정성, 변동성 등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년 이후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은 2% 내외 수준인데, 이는 주식시장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15~'23년 동안 연간 수익률 추이를 보면 전체 기준 최저 0.02('22년)에서 최고 5.26%('23년)로 나타났다. 동 기간 원리금보장은 최저 1.35%('21년)에서 최고 4.08%('23년), 실적배당형은 최저 -14.2%('22년)에서 최고 13.27%('23년)로 나타났다. 동 기간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 수준으로 높지 않음에도 변동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적배당형 투자는 주식시장¹⁹⁾ 변동성에 영향을 받아 투자위험성이 높지만 이에 대응한 평균 수익률이 높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7~8% 수준인 국가에서는 수익률 변동성이 다소 크더라도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률이 낮으면서 변동성만 컸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19) 최근 5년 동안 주가변동율을 보면 '18년 △17.3%, '19년 7.7%, '20년 30.8%, '21년 3.6%, '22년 △24.9%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Ⅲ-9〉 연도별 운용 방법별 연간 수익률 추이

(단위 : %)

구분	전체	원리금보장	실적배당형	구분	전체	원리금보장	실적배당형
2015년	2.15	2.14	2.18	2020년	2.58	1.68	10.67
2016년	1.58	1.72	△0.13	2021년	2.00	1.35	6.42
2017년	1.88	1.49	6.58	2022년	0.02	1.83	△14.20
2018년	1.01	1.56	△3.82	2023년	5.26	4.08	13.27
2019년	2.25	1.77	6.38	단순 평균 (2015~2023년)	2.08	1.96	3.04

주: 1) 총비용 차감 후 적립금 가중평균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에는 대기성자금 포함
2) △는 '-'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4. 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5. 16), "퇴직연금 총적립금 382.4조 원, 5년간 2배 성장_2023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여서 단기적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퇴직연금 자산 누수와 관련된 이슈들도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다. 현행 제도상 퇴직연금은 가입 중 중도인출, 이직 시 해지(중도해지)를 통해 적립금에서 누수될 수 있다. 2022년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를 통해 누수된 금액은 연간 15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퇴직연금의 연속성에 상당한 문제를 보인다. 중도인출은 2022년 기준 1.7조 원, 중도해지는 13.9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구입, 주거임차 등 주택관련이 85%를 차지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생애근로 기간 동안 평균 4~5회 이직이 발생하는데, 이직 시 대부분 해지되어 노후자산으로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표 Ⅲ-10〉 연도별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이전 및 해지 현황

(단위: 천 명, 조 원, %)

구분	IRP 이전		IRP 해지			
	이전 인원	이전 금액	해지 인원		해지 금액	
2015년	785	10.7	717	(91.4%)	9.5	(88.8%)
2016년	788	10.7	740	(93.8%)	10.6	(99.0%)
2017년	779	11.5	750	(96.2%)	10.1	(87.9%)
2018년	837	12.5	846	(101.1%)	10.8	(86.9%)
2019년	844	13.9	865	(102.4%)	11.2	(80.9%)
2020년	858	15.2	843	(98.2%)	11.1	(72.9%)
2021년	913	17.6	865	(94.7%)	11.7	(66.3%)
2022년	984	20.1	987	(100.3%)	13.9	(68.9%)

주: ()안은 이전 인원(금액) 대비 해지 인원(금액) 기준 해지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8. 12. 18),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27),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21),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2),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3. 12. 19),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그동안 적립금 누수에 대한 논의와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 및 해지 사유가 대부분 주택 구입 등이어서 이를 막을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문제는 이러한 적립금 누수가 자주 발생하고 누수되는 금액도 커지면, 장기투자가 어려워져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동안 퇴직연금 주요 이슈는 수익률, 중도인출 및 해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논의를 별개로 하고, 제도 내실화 측면에서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보장성 보험을 편입할 경우 잠재수익률²⁰⁾이 제고되고, 중도인출/중도해지에 따른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 잠재수익률은 금융시장에서 실현되는 투자수익률(시장수익률) 외 보험 가입에 따른 심리적 보상 등 후생부분을 반영한 수익률을 의미함(세부산출 방식은 이하 내용 참조)

나. 운용 방법 변경 가능성

1) 원리금보장상품의 시장수익률과 잠재수익률

퇴직연금 운용 방법별로 보면 2023년 말 전체 적립금 382.4조 원 중 원리금보장상품이 333.3조 원(87.2%, 대기성자금 포함)을, 실적배당상품이 49.1조 원(12.8%)을 차지하고 있다. 업권별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보면 금투업권은 73%, 은행 및 보험업권은 90% 이상을 차지하여 모든 업권에서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1〉 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근로 복지 공단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상품	178.5	90.1	63.6	73.3	72.5	92.4	14.6	98.6	4.2	96.5	333.3	87.2
실적배당상품	19.6	9.9	23.2	26.7	5.9	7.6	0.2	1.4	0.2	3.5	49.1	12.8
합계	198.0	100.0	86.7	100.0	78.4	100.0	14.8	100.0	4.3	100.0	382.4	100.0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5. 16), “퇴직연금 총적립금 382.4조 원, 5년간 2배 성장_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는 비중이 크므로 평균 수익률이 일반 예·적금의 이자 수익률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명확하다. 원리금보장상품의 수익률은 2023년 4.08%였으며, 업권별로 보면 은행 3.99%, 금융투자 4.64%, 생명보험 3.74%, 손해보험 4.52%, 근로복지공단 3.58%로 나타나고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²¹⁾이 은행 예금 및 보험 GIC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약정이율²²⁾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여기에 머니무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자별 수신금리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실적배당상품 중심의 금융투자업권에서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을 설정한 것은 이를 설명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1) 최근 기준금리 인상 ('21. 6) 0.50% → ('21. 11) 1.00% → ('22. 7) 2.25% → ('23. 1) 3.5%

22)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추이(%): ('21년) 1.35% → ('22년) 1.83% → ('23년) 4.08%

〈표 III-12〉 업권별 연간수익률 현황(2023년)

(단위: %, %p)

구분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전체
전체	4.87	7.11	4.37	4.63	3.94	5.26
원리금보장상품	3.99	4.64	3.74	4.52	3.58	4.08
실적배당상품	12.93	13.89	11.96	12.38	13.82	13.27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5. 16), “퇴직연금 총적립금 382.4조 원, 5년간 2배 성장_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퇴직연금의 장기적 속성을 고려하면 시장수익률은 2% 수준이다. 원리금보장상품의 실질 수익률이 시장 금리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통한 수익률 제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성향을 단기간에 바꾸기도 어렵거나 수익률 보장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보장성보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보장성보험을 편입하되, 그 정당성을 (가치)잠재수익률 제고 수준을 검토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잠재수익률은 가입자 1인당 평균납입액(보험료) 대비 수급자 1인당 평균수급액(보험금)으로 산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동 수익률은 보험의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보장성보험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보험금은 자신이 지불한 보험료보다 많으므로 잠재수익률은 1보다 크게 된다. 호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수급자의 잠재수익률 즉 보험료 현가 대비 보험금 현가는 8.4배 정도로 조사된 바 있다.²³⁾ 반면, 사고가 없는 가입자의 경우 적립금만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험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 등에 따른 수익을 향유하였다는 점에서 수급자 만큼 잠재수익률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논리에 의하면 모든 가입자는 일정한 노후준비(보험료)로 자신의 노후생활(보험금)을 보장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립금 잠식 우려 논란을 고려하여 그 허용범위(저자산층 제외, 적립금의 10% 이내 등)를 설정함으로써 보장성보험 편입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23) 제3장 호주사례에서 1인당 보험료대비 보험금의 비중이 8.4배 수준으로 추정됨

그 외에 보장성보험의 편입은 업권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유인도 있는데, 실제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상품 라인업은 업권의 상품에 무관하게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권간 형평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업권에서 보장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예,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시비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류건식 외(2016)는 DC형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보험을 편입할 경우 가입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41.5%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는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보장성보험을 포함할 경우 운용지시를 통해 가입할 유인이 클 것임을 보여준다.

2) 운용자산의 중도인출·해지 보완

보장성보험을 운용 방법으로 포함할 필요성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유로, 현행 퇴직연금 적립금은 의료, 요양 시 중도인출되고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행 제도에서 의료 목적일 경우 중도인출 형태로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보장성보험을 운용 방법에 편입하게 되면 적립금 누수 없이 사고 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인원(금액) 기준으로 보면, 주택 구입이 46.6%(55.6%), 주거 임차가 31.6%(29.2%), 회생 절차가 14.6%(6.0%), 장기요양(의료비 포함)이 4.9%(4.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에 장기요양²⁴⁾을 이유로 중도인출된 금액은 전체 중도인출액(1조 7,429억 원) 중 772억 원(4.4%)이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며, 50대와 60대에서 장기요양에 의한 중도인출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60대의 경우 중도인출 대상자의 10.2%(금액 기준 4.6%)가 장기요양에 의해 중도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3〉 참조).

이러한 결과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를 확장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및 이직 시 해지의 경우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유사할 것으로 보면, 장기요양에 의한 인출 규모는 훨씬 크게 된다. 이는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장성보험의 편입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4)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표 III-13〉 인출사유/성/연령별 중도인출 현황(2022년)

(단위: 명, 억 원,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3,616 (7.3)	497 (2.8)	21,116 (42.4)	5,399 (31.0)	16,061 (32.2)	6,403 (36.7)	7,548 (15.2)	4,363 (25.0)	1,470 (3.0)	767 (4.4)	49,811 (100.0)	17,429 (100.0)
주택구입	1,135 -	195 -	10,624 -	3,127 -	7,762 -	3,768 -	3,258 -	2,261 -	446 -	348 -	23,225 (46.6)	9,698 (55.6)
주거임차	1,788 -	232 -	7,082 -	1,762 -	4,498 -	1,842 -	2,048 -	1,144 -	326 -	115 -	15,742 (31.6)	5,095 (29.2)
장기요양	20 (0.6)	3 (0.6)	468 (2.2)	109 (2.0)	1,097 (6.8)	341 (5.3)	681 (9.0)	284 (6.5)	150 (10.2)	35 (4.6)	2,416 (4.9)	772 (4.4)
파산선고	6 -	0 -	31 -	2 -	47 -	2 -	38 -	3 -	9 -	1 -	131 (0.3)	8 (0.0)
회생절차	646 -	56 -	2,834 -	333 -	2,623 -	416 -	1,082 -	230 -	79 -	7 -	7,264 (14.6)	1,041 (6.0)
기타	21 -	11 -	77 -	67 -	34 -	34 -	441 -	442 -	460 -	261 -	1,033 (2.1)	815 (4.7)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3. 12. 19),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IV

주요국의 퇴직연금 운용과 시사점

1. 호주

가. 퇴직연금 운용 규제

1) 퇴직연금 운용 근거법

호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대부분의 국가와 유사하게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임의 개인연금(저축 등)으로 이루어진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호주의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며, 비교적 늦은 1992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받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호주의 퇴직연금은 “Superannuation Guarantee(Administration) Act 1992(SGAA)”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²⁵⁾ 현재 사용자 부담금은 2023년 기준 11%이며, 2025년 이후 12%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근로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호주 퇴직연금을 DC형과 DB형으로 구분한 통계를 보면, 2,300여 개 계좌 중 95.6%가 DC형이며, DC형과 DB형을 동시에 보유한 비중을 포함하면 DC형 가입률은 96.6%에 이른다. 적립금 기준으로도 DC형 또는 DC형과 DB형을 동시에 보유한 비중이 85.3%로 나타나, 호주 퇴직연금은 계좌 수와 적립금 규모 면에서 DC형이 중심이 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25) Parliament of Australia 보도자료, “Superannuation after 30 years”

〈표 IV-1〉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유형별 규모(2023년 6월)

구분	계좌		적립금	
	개수(천 개)	비중(%)	금액(백만 AUD)	비중(%)
확정급여형(DB형)	770	3.3	375,503	14.6
확정기여형(DC형)	22,033	95.6	2,092,814	81.6
DB형&DC형	229	1.0	97,597	3.8
전체	23,037	100.0	2,565,913	100.0

주: APRA의 감독을 받지 않는 자기관리형기금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자료: APRA(2020)

호주 퇴직연금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계약형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신탁형(기금형)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수탁자(기금 혹은 금융기관)는 퇴직연금 관련 법령²⁶⁾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신탁법에서 요구하는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신탁의 특성상 수탁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투자 자산을 관리하고, 가입자 이익을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호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은 “Superannuation Industry(Supervision) Act 1993”(SIS Act) 및 “Superannuation Industry(Supervision) Regulations 1994”(SIS Regulations) 등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운용자산은 주식, 부동산, 고정금리 자산, 현금성 자산 등에 자유롭게 투자될 수 있다. 수탁자는 가입자에게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데, 일반적인 투자 옵션으로는 성장형 펀드, 밸런스형 펀드, 보수형 펀드, 그리고 현금성 자산 등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금성 자산에 원금보장형 생명보험이 포함된다는 점이다.²⁷⁾ 즉, 적립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성 및 보장성 생명보험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가입자는 다양한 투자 옵션을 선택하거나 직접적으로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다. 소속 기금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투자 옵션 유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입자는 더 적합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 다른 기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 소위 기금선택형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26) 호주 퇴직연금 관련 법령은 “Superannuation Industry(Supervision) Act 1993”, “Superannuation Industry(Supervision) Regulations 1994”, “Corporations Act” 등이 있음

27) moneysmart.gov.au webpage, “Super investment options”

〈표 IV-2〉 호주 퇴직연금의 투자 유형

구분	조사 내용
성장형 펀드 (Growth investment options)	• 주식 또는 부동산에 약 85%, 고정금리 자산 또는 현금에 15%에 투자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에 100%를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밸런스형 펀드 (Balanced investment options)	• 주식 또는 부동산에 약 70%, 고정금리 자산과 현금에 30%를 투자하거나 주식과 부동산에 50%씩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보수형 펀드 (Conservative investment options)	• 주식 또는 부동산에 약 30%, 고정금리 자산과 현금에 약 70%를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현금성 자산 (Cash)	• 예금 보호를 받은 금융기관의 예금 또는 원금보장형 생명보험(연금보험 포함)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자료: moneysmart.gov.au webpage, "Super investment options"; Parliament of Australia, "Chapter 4 - Member investment choice and the role of the trustee"

2013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디폴트 투자상품인 마이슈퍼 상품은 소극적인 가입자를 위해 단일 투자상품 내에서 분산투자 기능이 가능하도록 요구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기금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라이프 사이클 펀드(Life cycle fund), 목표만기 펀드(Target date fund), 혼합형 펀드(Balanced fund)를 마이슈퍼 상품으로 지정하였다. 이 펀드들은 가입자의 은퇴시기를 고려하여 수탁자가 자동으로 투자자산 비중을 변경한다. 일반적으로 젊은 시기에는 은퇴 시점까지 투자가 가능한 기간이 길므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투자를 하나, 은퇴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전환된다. 마이슈퍼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수탁자의 투자상품 배분에 따라 원금보장형 생명보험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2) 퇴직연금 운용 방법과 보장보험

호주 퇴직연금 운용 방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호주의 퇴직연금 운용 방법 중 특징적인 것은 퇴직연금 수탁자(기금)는 가입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장보험 상품을 구입,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보장보험 상품의 유형은 사망보장보험(DC/LC), 영구장해보험(TPD), 소득보상보험(IP)으로, 단체보험으로 제공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²⁸⁾

28) Superannuation Industry(Supervision) Regulations 1994, Division 4.2—Operating standards, 4.07. Operating standard—permitted types of insurance

〈표 IV-3〉 호주 슈퍼펀드(Super funds)의 생명보험(Life insurance) 제공 유형

구분	조사 내용
사망보장보험 (Death cover/Life co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말기 질병에 걸릴 경우 일시금 또는 정기 소득을 수익자(유족 등)에게 지급 • 사망보장보험(Life cover)은 일반적으로 70세에 종료됨
영구장애보험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T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가 심각한 장애를 입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 경우 지급 • TPD 보험은 일반적으로 65세에 종료됨
소득보장보험 (Income protection co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가 일시적 장애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정 기간(2년, 5년 또는 일정 연령까지) 정기적 소득을 지급

자료: moneysmart.gov.au webpage, "Insurance through super"

호주에서 보장보험 상품을 퇴직연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2012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개혁과 관련된다. 2012년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존 디폴트 투자상품과 별개로 '마이슈퍼(MySuper)'라는 새로운 디폴트 투자상품을 도입하였다.²⁹⁾ 2014년부터 마이슈퍼 상품을 제공하는 수탁자만이 신규 가입자의 퇴직연금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017년 7월부터 기존 디폴트 투자상품에 가입된 모든 퇴직연금 계정은 마이슈퍼 상품에 투자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7년 7월부터는 퇴직연금의 디폴트 투자상품은 마이슈퍼로 일원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이슈퍼 상품에 수탁자가 반드시 소속 가입자에게 사망보장보험 등 보장보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사망보장보험, 영구장애보험 등은 보장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망보장보험은 65세까지, 영구장애보험은 70세까지 보장된다.³¹⁾

수탁자가 제공하는 보험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다. 수탁자는 가입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하고(계약자), 소속 가입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급(수익자)한다. 수탁자는 소속 가입자의 계좌에서 월 단위로 보험료를 공제한 후 생명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주체가 된다. 현재 대부분 수탁자는 가입자를 위해 자동으로

29) Superannuation Legislation Amendment(MySuper Core Provisions) Act 2012

30) Superannuation Guarantee(Administration) Regulations 2018, PART5—CHOICE OF FUND REQUIREMENTS 14. Requirement for providing or offering insurance in respect of death

31) moneysmart.gov.au webpage, "Insurance through super"

사망보장보험 및 영구장애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수탁자는 소득보상보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험은 가입자가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가입이 배제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운영된다. 옵트인(Opt-in)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엄격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져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고, 가입자가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부족하여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령 혹은 건강 악화시점까지 가입을 미룰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경희 2018).

호주 슈퍼펀드에 보장성보험을 강제적으로 포함할 경우 몇 가지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장점으로 연금 펀드에서 대량으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고, 보험료가 자동 차감되어 결제가 간편하며, 단체형태로 가입되므로 별도의 건강검진이 필요 없으며, 기본수준 이상의 보장이 가능하고, 납부금에 15%의 세금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단점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의 경우 보장수준이 낮을 수 있는데, 이는 단체 보장성보험의 특성상 납부 대비 보장수준은 낮지 않지만 절대적 보장수준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을 변경하거나 기여금을 중단할 경우 비활성화 계정이 되어 보장이 종료될 수 있고, 보험료가 적립금에서 공제되므로 은퇴 저축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표 IV-4〉 호주 슈퍼펀드의 보장성보험 포함 시 장단점

장점		단점	
낮은 보험료	• 연금 펀드가 대량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저렴함	제한된 보장 수준	• 슈퍼를 통한 보장보험은 기본적 수준에 맞춰져 있어 일반 보험보다 보장수준이 제한 될 수 있음
간편한 결제	• 보험료가 자동으로 슈퍼펀드에서 공제되므로 별도 지급 관리가 필요 없음	보장의 종료 가능성	• 기금 변경, 기여금 중단, 계정 비활성화 시 보장이 종료될 수 있음
건강 검진 없음	• 대부분의 연금 기금이 기본 보장 수준을 건강 검진 없이 수락함	연금 잔액 감소	• 보험료가 적립금에서 공제되므로 은퇴 저축이 감소할 수 있음
보장 확대 가능	• 기본 보장 외에 추가 보장을 통해 맞춤형 보험 가입이 가능	-	-
세제혜택	• 사용자 및 본인의 납입액에 저율 과세되어 15% 세율이 적용	-	-

자료: moneysmart.gov.au webpage, "Insurance through super"

특히,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보험금을 통해 해당 위험에서 구제되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어 기금 잠식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호주 정부는 이러한 적립금 잠식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계정들은 보험 자동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계정에는 16개월 이상 기여금이 입금되지 않은 계정(가칭 '비활성계정'), 25세 미만 가입자의 계정(가칭 '저연령 계정'), 잔액이 6천 AUD 미만인 계정(가칭 '저적립계정')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계정을 보유한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퇴직연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탁자에 의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유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활성계정'의 경우 수탁자는 보험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가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유지의사를 표시하거나 해당 계정에 기여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물론 보험에 가입된 계정의 잔액이 6천 AUD 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험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를 계약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소속 가입자의 이직 또는 은퇴로 효력이 중지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보장을 원한다면 보험회사에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건강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승인할 경우 해당 가입자의 보험계약은 새롭게 가입하는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은퇴할 경우에도 기존의 단체보험계약을 개인보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전을 승인할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다. 물론 계약이전을 할 경우 보험료는 단체보험 요율에 비해 높은 개인보험 요율 기준에 적용돼 다시 산정된다.

나. 퇴직연금 단체보험 운용 현황

1) 가입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³²⁾에 따르면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약 1,500만 명의 호주인은 적립 단계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약 800만 명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서 800만 명의 보험 가입자의 보험 형태는 퇴직연금 수탁자가 제공하는 단체보험과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추가로 가입한 개인보험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계좌 보유자 중 51.6%(800만 명/1,500만 명)가

32) ASIC(2023)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계좌 중 71%(800만 명 × 71%=560만 명)는 퇴직연금 수탁자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단체보험이다. 한편, 호주 ASIC는 퇴직연금 단체보험으로 인한 적립금 잠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활성계정, 저연령계정, 저적립계정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이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즉, 퇴직계좌 중 노후소득보장에 취약한 계좌에 대해 적립금 누수 방지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16개월 이상 기여금이 납입되지 않은 계좌(비활성계정)에 대해서는 보험을 해지하였고, 2020년 4월부터 25세 미만 가입자(저연령계정)나 계좌 잔액 6천 AUD 미만의 가입자(저적립계정)에게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5년(2018년 6월~2022년 6월)의 상황을 보면, 호주 퇴직연금 단체보험 가입계좌 수는 201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완만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보면, 퇴직연금 기금 중 약 960만 개의 계좌에 사망보장보험, 약 850만 개의 계좌에 영구장애보험, 약 440만 개의 계좌에 소득보상보험이 설정되어 있다. 가입계좌 수를 기준으로 보면, 보험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기금은 산업형과 소매형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연금 기금들이 가장 많이 제공하는 보험 형태는 사망보장보험과 영구장애보험이었다. 이러한 호주 퇴직연금 수탁자들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기금 평가회사들이 평가 기준의 하나로 보험상품 제공 여부 및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보험상품 제공이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³³⁾

33) APRA,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3 - superannuation entities”의 Table 9a를 이용하여 작성함

〈표 IV-5〉 호주 퇴직연금의 보험 종류별/기금 형태별 가입자 계좌 수 추이

(단위 : 천 개)

구분		2018. 6	2019. 6	2020. 6	2021. 6	2022. 6
사망 보장 보험	기업형	227	218	171	150	140
	산업형	8,324	8,311	5,702	5,536	6,023
	공적기금	1,822	1,751	1,572	1,473	1,132
	소매형	4,468	4,642	2,631	2,482	2,271
	소계	14,841	14,922	10,076	9,641	9,566
영구 장애 보험	기업형	201	193	155	138	127
	산업형	7,260	7,311	5,000	4,837	5,312
	공적기금	1,817	1,731	1,548	1,437	1,110
	소매형	3,774	3,893	2,172	2,071	1,915
	소계	13,052	13,128	8,875	8,483	8,464
소득 보상 보험	기업형	70	66	57	42	38
	산업형	3,592	3,702	2,720	2,677	3,034
	공적기금	904	894	835	830	610
	소매형	1,091	1,123	794	737	708
	소계	5,657	5,785	4,406	4,286	4,390
기타 ¹⁾ 보험	기업형	0	0	0	0	0
	산업형	0	0	0	0	0
	공적기금	0	0	0	0	0
	소매형	24	22	19	16	-
	소계	24	22	19	16	-
합산 ²⁾	기업형	498	477	383	330	305
	산업형	19,176	19,324	13,422	13,050	14,369
	공적기금	4,543	4,376	3,955	3,740	2,852
	소매형	9,357	9,680	5,616	5,306	4,894
	소계	33,574	33,857	23,376	22,426	22,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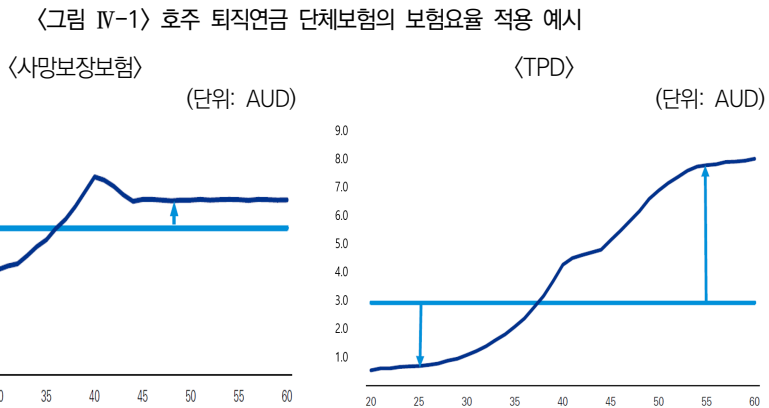
주: 1) 기타 보험은 사망보장보험, 영구장애보험 또는 소득보상보험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망보장보험금, 영구장애보
험금을 제공하는 보험을 의미함

2) 사망보장보험, 영구장애보험, 소득보상보험, 기타보험을 단순 합산함

자료: APRA,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
3 - superannuation entities"의 Table 9a를 이용하여 작성함

2) 보험료/납부금

호주 퇴직연금에서 제공되는 단체보험은 가입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단일률을 적용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탁자는 성별, 연령별, 직군별 단일률을 적용하는 경향이 높다. 단일률 적용을 통해 여성이 남성을, 젊은층이 장년층을, 사무직이 생산직을 보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래 <그림 IV-1>에서는 연령별 위험률을 적용한 보험료와 단일률을 적용한 보험료 수준을 연령별로 비교한 것이다. 대체로 위험률이 낮은 40세 미만 계층이 위험률이 높은 40대 이상 계층을 보조하게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³⁴⁾



주: 1) 가로축은 연령, 세로축은 주당 보험료를 의미함

2) 직선 그래프는 단일률(Unit-rate premium) 적용 시 보험료이며, 곡선 그래프는 연령별 위험률(Age-rated premium) 적용 시 보험료를 의미함

자료: KPIM(2017); 이경희(2018) 재인용함

최근 5년(2018년 6월~2022년 6월)간 호주 퇴직연금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 추이를 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취약계층의 보험에 대한 자동가입 해지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호주 퇴직연금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87.84억 AUD으로 나타난다. 이 중 소매형 기금이 수입보험료를 가장 많이 수취하는 기금으로 41.07억 AUD로 전체 약 47% 수준이다. 가입자 계좌 수가 가장 많은 산업형 기금의 수입보험료는 34.49억 AUD로 약 39%에 달한다.

34) KPIM(2017); 이경희(2018)

〈표 IV-6〉 호주 퇴직연금 기금 형태별 단체보험 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AUD, %)

구분		2018. 6	2019. 6	2020. 6	2021. 6	2022. 6
기업형 기금	수입보험료(A)	142	141	120	115	137
	총납부금(B)	2,220	2,206	2,235	2,058	2,118
	A/B	6.4	6.4	5.4	5.6	6.5
산업형 기금	수입보험료(A)	3,509	3,429	3,143	2,936	3,449
	총납부금(B)	40,722	45,368	49,805	55,190	74,085
	A/B	8.6	7.6	6.3	5.3	4.7
공적 기금	수입보험료(A)	1,151	1,235	1,137	1,338	1,091
	총납부금(B)	33,684	34,876	37,317	36,786	30,729
	A/B	3.4	3.5	3.0	3.6	3.6
소매형 기금	수입보험료(A)	4,452	4,420	4,107	4,293	4,107
	총납부금(B)	31,459	32,246	31,634	33,148	38,877
	A/B	14.2	13.7	13.0	13.0	10.6
합계	수입보험료(A)	9,253	9,225	8,506	8,683	8,784
	총납부금(B)	108,085	114,696	120,991	127,182	145,809
	A/B	8.6	8.0	7.0	6.8	6.0
총자산 대비	수입보험료(A)	9,253	9,225	8,506	8,683	8,784
	총자산(T)	1,914,000	2,072,000	2,076,000	2,426,000	2,397,000
	A/T	0.5	0.4	0.4	0.4	0.4

주: 수입보험료는 각 기금에서 가입자에게 수취하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총납부금은 매년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총기여금을 의미함. 총자산은 각 기금의 누적 적립금을 의미함

자료: APRA,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3 - superannuation entities"의 Table 2 및 Table 9를 이용하여 작성함

호주 퇴직연금에서 제공되는 단체보험의 보험료 재원은 가입자 계정의 적립금이다. 즉, 수탁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단체보험을 구입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총납부금 대비 수입보험료(A/B)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2018년 6월~2022년 6월)간 8.6%에서 6.0%로 감소함에 따라 호주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투자되는 보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적립금 대비로 보면 동 기간 0.5%에서 0.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호주 퇴직연금의 운용수수료 수준이 적립금 대비 0.5%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가입에 따른 재정 누수는 실제로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기금 형태별로 보면 공적기금의 보험 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반면 소매형기금의 동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료의 절대 규모면에서는 소매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업형기금이 많았다.

3) 보장수준

2019년 6월 대비 2022년 6월 퇴직연금 보험금 지급 건수와 총지급보험금은 감소하였지만, 건당 지급보험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기준, 보험금 지급 건수는 약 4.8만 건에 달하고, 총지급보험금은 47억 AUD, 건당 지급보험금은 약 9.9만 AUD이다.

사망보장보험과 영구장애보험은 공적연금의 지급유형을 고려하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망보장보험 수급자인 유족이 16.6만 AUD(장애보험 14.7만 AUD)은 1억 5천만 원(1억 4천만 원)³⁵⁾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급하는 수급자의 적립액 수준과 유사하다.

〈표 IV-7〉 호주 퇴직연금의 보험 종류별 지급 건 및 지급보험금 추이

(단위: 개, 백만 AUD, AUD)

구분	2019. 6			2022. 6		
	지급 건수	총 지급보험금	건당 지급보험금	지급 건수	총 지급보험금	건당 지급보험금
사망보장보험	15,929	2,342	147,027	10,483	1,744	166,365
영구장애보험	15,732	2,159	137,236	16,368	2,404	146,872
소득보상보험	25,742	581	22,570	20,825	568	27,275
전체	57,403	5,082	88,532	47,676	4,716	98,918

자료: APRA,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3 - superannuation entities"의 Table 9a를 이용하여 작성함

이를 계좌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좌당 납부보험료 대비 건당(계좌당) 급여수준 형태로 추정해 보면, 계좌당 납부액은 2022년 6월 기준으로 392AUD로 추정된다. 즉, 연간 계좌당 392 AUD의 보험료를 30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총납부액은 납부하고 30년 하면 11,754 AUD이고 30년 중에 사고난다고 할 경우 보험금으로 98,918 AUD(약 8.4배)를 수령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위험에 처할 경우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납부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위험에 노출된 가입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으로 이해된다.

35) 호주 환율은 1AUD=930.01원(2024. 7. 20 기준)

〈표 IV-8〉 호주 퇴직연금 보험료의 계좌당 환산액

(단위: 백만 AUD, 백만 계좌, %)

구분	2018. 6	2019. 6	2020. 6	2021. 6	2022. 6
수입보험료(A, 백만 AUD)	9,253	9,225	8,506	8,683	8,784
계좌수(B, 백만 계좌)	34	34	23	22	22
연간 : A/B(AUD)	276	272	364	387	392
20년 납부 시 : A/B * 20(AUD)	8,268	8,174	10,916	11,616	11,754

다. 시사점

국제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보험상품을 연계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호주는 디폴트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호주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이유는 보험사고(사망이나 영구장애) 시점부터 은퇴 연령까지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첫째,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낮아서 보험료가 저렴하다. 둘째, 사용자 부담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개인의 현금 흐름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셋째, 표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언더라이팅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넷째, 개인별 니즈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³⁶⁾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연금은 소득보장만 고려되므로 장애·유족연금 형태의 보장은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에서 사망·장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앞에서 제시한 긍정적 효과를 통해 저부담으로 퇴직연금에 장애·유족연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확장하여 퇴직 시 가입자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납부를 통해 장애·유족연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6) 이경희(2018)

(표 IV-9) 호주 퇴직연금 자산의 보장성 보험상품 구입 가능성과 특징

구분	설명
보장성 보험상품 구입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장성보험을 가입해야 함(강제 가입/구입)
보장성 보험상품 유형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 보험상품: 사망보장보험(종신보험), 영구장애보험, 소득보상보험 •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퇴직연금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능을 제공함 * 질병보험은 퇴직연금에서 인정하는 보장성보험 대상에 속하지 않음
보험상품 구입 제한 및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자동 가입 제외(의무면제): 16개월 이상 기여가 없거나('비활성계정'), 25세 미만 가입자('저연령계정'), 잔액이 6천 AUD 미만('저적립계정') • 적용한도: 제한이 없음. 사망보장보험의 경우 권고 보험가입금액이 존재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의 단체보험(보장성보험) 가입률: 51.6%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보장보험(종신보험), 영구장애보험,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급여상한한 여부 등 급여규제는 확인되지 않음 * (1인당 연간지급액, '22년 6월) 사망보장보험 16.6만 AUD(1억 5천만 원), 장애보험 14.7만 AUD(1억 4천만 원), 소득보상보험: 2.7만 AUD(2천 5백만 원)
법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erannuation Guarantee(Administration) Act 1992(SGAA) • Superannuation Industry(Supervision) Act 1993(SIS Act); Superannuation Industry(Supervision) Regulations 1994 (SIS Regulations)

2. 미국

가. 퇴직연금 운용 규제

1) 퇴직연금 운용 근거법

미국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974년 도입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미국 퇴직연금제도는 강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에 의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근로자의 추가 부담도 가능하다. 제도 운영형태는 크게 확정급부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계좌제도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³⁷⁾로 구분된다.

37) IRA제도는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에 따라 1974년 도입됨

ERISA법 Title I 의 Section 404와 406 등에 의하면 운용자산은 DB형, DC형 모두 투자형 자산에 투자될 수 있고, 일부는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Section 404조에 퇴직연금제도의 신탁 관리자(퇴직연금사업자인 기금을 의미함)가 신탁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산을 가입자(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관리한다는 ‘신의성실 의무’와 ‘투자 다각화’, ‘투자전문가의 지원’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Section 406에는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투자형 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Section 401, 402, 408 등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보험상품을 포함한 보험형 자산을 구입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재정적 안정성 조항, 구입하는 보험상품의 비용과 수수료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연기금 운용의 건전화화를 위해 연기금운용법(PFEA2004; Pension Funding Equity Act of 2004(P.L. 108-218)을 제정했다. 이 법은 ERISA법과 1986년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에 있던 기금운용 관련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동 법 제101조에 의하면 DB형의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 연기금의 손실분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상환 시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정 산업(항공산업 등)에서의 사용자들에게 연금 부족액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규정되었다.

〈표 IV-10〉 미국 퇴직연금(DB형) 투자자산 및 운용 규정 관련 주요 내용

관련 규정		주요 내용
투자상품 관련(ERIS A법 Title I)	Section 404와 406	운영자산은 투자형 보험형 자산에 투자 가능
	Section 404조	신탁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 규정: ‘신의성실 의무’와 ‘투자 다각화’, ‘투자전문가의 지원’ 조항 등이 포함
	Section 406	투자 규제: 특정 투자형 자산 거래를 금지
	Section 401, 402, 408 등	보험형 자산 구입 방법과 조건 규정: 보험회사의 재정 안정성, 보험상품의 비용과 수수료 등
연기금의 재정 건전성	연기금운용법(PFEA2004) 제101조	특정 기간 동안의 법적 요구 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었지만, 이후의 법률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률로 대체됨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PPA)	연기금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 기여금 요건, 기금의 회계 규정 개선 등 연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둠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SECURE) Act	퇴직제도와 연기금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IRA, 401(k)에 관한 규정을 개선

또한 IRC Section 401(h)³⁸⁾ 의하면 DB형의 경우 연금재정의 초과부분³⁹⁾을 특정 퇴직자의 건강계좌(401(h) 계정)에 사용자가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Section 401(h)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계좌(401(h) 계정)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자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401(h) 계정은 퇴직 후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별도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동 계좌에 입금되는 기여금은 연금제도의 다른 기여금과 명확히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401(h) 계정의 기여금은 퇴직연금 전체 기여금 중 일부(25%)로 제한되며, 이는 건강계좌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 제도는 DB형 퇴직연금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본인의 기여금 손실 없이 노후소득을 보장받으므로, 퇴직연금과 기업복지가 연계되어 기업에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미국의 DB형 퇴직연금은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을 위해 퇴직계좌를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퇴직자의 노후복지를 두텁게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401(h) 계정은 독립적 계좌인 건강저축계좌(HSA; Health Savings Account)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401(h)와 HSA는 모두 건강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을 가진 계좌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401(h)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설정되는 의료비용 보조 계좌이며, DB형 퇴직연금의 하위계좌라고 할 수 있다. 401(h)는 사용자가 기여금을 납부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DB형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운영된다. 한편, HSA는 사용자나 개인이 설정할 수 있는 의료비 저축 계좌다. 퇴직연금 제도와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계좌이며, 고가공제건강보험(HD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와 연계된다. 계좌에 있는 자금은 이연이 가능하고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출 시 세금이 면제된다.

38)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01(h)

39) 연금플랜의 자산이 모든 미래 연금지급의무를 충당하고도 남은 자산을 의미함

〈표 IV-11〉 401(h)와 HSA의 차이점

구분	401(h)	HSA
설정 주체	사용자	사용자 또는 개인
연계 플랜	DB(Defined Benefit) 플랜의 일환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필수
기여자	사용자	사용자와 개인
소유권	사용자가 설정하고 관리	개인 소유 및 관리
기여금 한도	플랜의 규정에 따라 다름	2024년 기준 개인 \$3,850, 가족 \$7,750
사용 시기	퇴직 후 의료비 보조	현재 및 미래의 의료비
세제 혜택	기여금은 소득공제 가능, 분배 시 면세	기여금은 소득공제, 사용 시 면세

자료: IRC Section 401(h) 원문과 IRS Publication 575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

한편,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할 경우 해당 계좌가 개인의 별도 계좌로 연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사용자가 퇴직연금 제도의 일부로 설정하고 관리하나, 기본적으로 DB형이므로 DC형처럼 개인이 독립적으로 계정을 설정하거나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퇴직 후에도 해당 계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2) 퇴직연금 운용 방법과 보장보험

미국의 퇴직연금 운용 방법도 호주와 유사하게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ERISA법을 비롯한 미국 퇴직연금 관련 제도들은 호주와 같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보험은 확인되지 않는다. ERISA법은 주로 퇴직연금제도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관리 및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가 특정 유형의 보험을 제공하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DB형 퇴직연금은 별도의 건강계좌(401(h))를 통해 퇴직자에게 건강관련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 DC형 퇴직연금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개인의 자율에 따라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다만, DC형인 401(k)에서도 예기치 않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긴급 상황 시 퇴직연금 자산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도인출(Hardship withdrawal)

제도가 있다. 이 경우 의료비, 주택 소유 관련 비용(예: 주택 구매 또는 주택 압류 방지), 교육비, 장례비 또는 재난 복구 비용 등을 위해 인출할 수 있다.⁴⁰⁾

〈표 IV-12〉 미국 퇴직연금 유형별 건강보장 및 보장성보험 투자 비교

항목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건강보장 규정	IRC Section 401(h) 계정을 통해 건강 관련 비용을 지원	별도의 건강계좌 규정 없음
건강보장 방식	퇴직연금 자산의 초과 부분을 건강보험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초과 적립금(예: 110% 이상)은 401(h)로 이체가능(연금자산의 최대 1.75%)	개인이 별도로 건강보험을 선택하고 관리해야 함
퇴직연금 자산 활용	건강 관련 비용으로 활용 가능 * 사용자 기여금의 25%까지 보장성보험료로 납부가능	불가능(HSA 계정 가입) * 예외적으로 중도인출(Hardship withdrawal) 가능

미국 DB형 퇴직연금제도는 보험가입을 통해 사망보장을 하고, 사용자 기여금의 25%까지 보장성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납부 보험료를 부담한 사용자에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Burton, McFadden 1998). 동 세제혜택관련 내용은 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401(h)에 근거하고 있다. IRC Section 401(h)과 IRS Publication 575에 따르면 퇴직자는 퇴직 후에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장이 가능하고, 사용자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미국의 2022년 SECURE 2.0 Act에는 초과 적립된 DB형의 적립금을 퇴직자를 위한 의료 비용 및 생명보험 가입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nternal Revenue Code(IRC) 420조에 의하면 초과 적립된 연금기금(예: 110% 이상 적립)을 퇴직자의 건강계좌(401(h))로 이체할 수 있으며, 연금자산의 최대 1.75%를 이전할 수 있다. 건강계좌로 이전되는 초과 적립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사용자가 연금 제도에서 자산을 이전하여 퇴직자의 의료비로 사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자의 의료비로 사용될 때까지 과세이연 된다. MetLife의 백서에 따르면 이 규정의 목적은 퇴직 후 발생하는 건강 관련 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어 초과 적립된 연금 자산을 활용하여 퇴직자의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초과 적립된 연금 자산을 적절히 활용함

40) Internal Revenue Service(IRS) webpage

으로써 연금 제도의 재정상태를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자산 과잉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잉여 연금자산을 건강계좌로 이전함으로써 퇴직자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은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이 목적이다. 동 제도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SECURE 2.0 Act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MetLife survey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87%가 SECURE 2.0 조항의 초과 적립된 연금 자산이 퇴직자의 의료 및 생명보험(Life obligations)에 이전될 수 있도록 허용되기를 원하고 있다.⁴¹⁾

나. 퇴직연금 운용 현황

미국 퇴직연금 적립금은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으나, 혼합형(Trust and Insurance) 및 일반 퇴직연금 제도 등에서 건강보장 및 요양보험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 노동부 연례보고서(USDOL 2023)에 의하면, 연금자산으로 보험상품에 투자되는 항목은 4가지로 분류된다.

‘Form 5500-SF’는 퇴직연금 제도의 자산 및 보험 계약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항목으로, 중소규모 연금제도에서 사용된다. ‘일반 연금제도의 보험’은 일반 연금제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보험(Insurance) 항목으로, 여기에는 생명보험(사망보장보험 등),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412(i) Insurance’는 주로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생명보험(사망보장보험 등)과 연금보험 등에 투자될 수 있다. ‘혼합형(Trust and Insurance)’은 신탁과 보험을 결합하는 형태로 생명보험, 장기요양보험, 맞춤형 보험상품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에 투자될 수 있다.

41) Metlife(2023), “SECURE 2.0 Extends Provision Allowing Overfunded Pensions to Fund Retiree Medical/Retiree Life Liabilities”

〈표 IV-13〉 미국 퇴직연금 유형별 건강보장 및 보장성보험 투자 비교

항목	Form 5500-SF의 Insurance	일반 연금제도의 Insurance	Section 412(i) Insurance	Trust and Insurance
적용 대상	중소규모 퇴직연금제도	다양한 연금 제도 (DB형, DC형 모두)	확정급여(DB)형 연금제도	신탁 계좌와 결합된 자산
보험 종류	연금제도에 허용된 보험 상품	생명보험, 연금보험, 장기 요양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생명보험, 장기 요양보험, 맞춤형 보험 상품
목적	연금제도의 재무 정보 및 보험 계약 보고	연금 수익 확보 및 추가 보장을 통해 퇴직자 재정안정 제공	보험계약을 통해 연금 자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보장	신탁과 보험 결합으로 자산 보호 및 추가 보장을 제공
규제	연금제도의 자산 및 보험 계약에 대한 IRS 보고	연금제도의 일부로 사용	엄격한 IRS 규제를 받음	유연한 구조로 다양한 보험 상품 포함 가능
특징	연금제도의 재무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	자산 보호와 증식을 위한 도구로 보험 계약 사용	보험 상품에 의해 자금이 조달(보험 계약에 의해 관리)	신탁 계좌를 통해 맞춤형 자산 관리
유연성	단순화된 보고 양식, 중소규모 연금제도에 적합	연금 기금 내에서 보험 계약이 사용되며, 특정 목적에 따라 선택됨	제한적, 고정된 보험계약 구조	높은 유연성, 다양한 보험 상품 결합 가능

자료: USDOL(2023)

미국의 퇴직연금 자산 중 신탁형(Trust)으로 운용되는 비중은 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혼합형(Trust and Insurance)이 33.3%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Form 5500-SF, 일반 연금제도의 Insurance에 투자되는 비중은 9% 수준이다. 이러한 비중이 보험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중으로 볼 수 없지만, 혼합형(Trust and Insurance) 및 '일반 연금제도의 보험' 등을 통해 저축성 보험뿐만 아니라 401(h) 보장보험 상품에 투자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IV-14〉 연금제도의 유형 및 자금조달 방법별 자산 규모(2021년 기준)

(단위: 100만 USD)

구분		전체	DB형	DC형
자산 투자	Form 5500-SF	1,087,167	63,278	1,023,889
	Insurance	72,979	17,449	55,530
	Section 412(i) Ins.	145	14	132
	Trust	7,624,389	2,262,679	5,361,709
	Trust and Insurance	4,384,825	1,326,946	3,057,879
	Not Determinable	3	-	3
	소계	\$13,169,507	\$3,670,366	\$9,499,141
급여액	Form 5500-SF	1,087,167	63,278	1,023,889
	Insurance	80,771	24,311	56,461
	Section 412(i) Ins.	227	11	216
	Trust	8,554,347	2,371,113	6,183,233
	Trust and Insurance	3,446,993	1,211,653	2,235,340
	Not Determinable	3	-	3
	소계	\$13,169,507	\$3,670,366	\$9,499,141

자료: USDOL(2023)

다. 시사점

미국에서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사용자 기여금의 25%까지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나, 초과 적립금을 건강계좌(401(h))로 납입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런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는 보험가입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지우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된다.

호주 사례에서와 유사하게 미국의 퇴직연금도 공적연금처럼 장애·유족연금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어⁴²⁾ 노후생활보장이 제고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노령연금만 보장해주고, 장애·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서비스까지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DB형태를 통해 가입자에게 단체보험 형태로 장애·사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근로자 복지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 미국의 공적연금(OASDI)은 기본적으로 고령자의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DB형 퇴직연금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도 장애·유족연금까지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해 보험상품을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을 통해 위험보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즉,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단체보험 형태로 납부하면 낮은 수수료와 보험료로 위험보장을 할 수 있어 장애·유족연금을 보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계리적 검토를 전제로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면 후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5〉 미국 퇴직연금 자산의 보장성보험 구입 가능성과 특징

구분	설명
보장성보험 구입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의 적립금으로 구입 가능(강제적용 아님) • DC형 적립금으로 구입 불가(HSA 가입을 통해 대체 가능)
보장성보험 유형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 투자계좌(401(k)), 건강계좌(401(h))로 구분됨 * 건강계좌(401(h))에서 의료비, 보장성보험(중신보험 등)의 가입 가능 * 연금제도의 초과 적립금을 건강계좌(401(h))로 납입 가능 • DC형: 건강계좌 없음(별도 HSA 가입 가능)
보험상품 구입 제한 및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 건강관련 비용(의료비, 보장성보험 등)으로 사용자 기여금의 25%까지 납부가능(사용자에게 세제혜택), 초과 적립된 연금기금(연금자산의 최대 1.75%)을 퇴직자의 건강계좌(401(h))로 이체 가능 • DC형: IRA 계좌에서 연금보험 구입 시, 만 50세 미만은 연간 \$6,500, 만 50세 이상은 \$7,500까지 기여 가능(보장성보험은 비해당)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의료비에 대한 환급 형태이며, 구체적인 급여는 사용자의 플랜 설계와 할당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법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l Revenue Code(IRC) Section 401(h) • Internal Revenue Code(IRC) Section 420 •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2022 (SECURE 2.0) Act

3. 일본

가. 퇴직연금 운용 규제

1) 퇴직연금 운용 근거법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1960년대 도입된 구(舊) 퇴직연금제도인 적격퇴직연금⁴³⁾과 후생연금기금⁴⁴⁾, 그리고 2000년대에 도입된 신(新)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기업연금(DB형)과 확정기여연금(DC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가운데 적격퇴직연금제도는 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2012년에 폐지되었으며, 후생연금기금은 신규 가입 금지로 사실상 2023년에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DB형 및 DC형 연금만이 남게 되었다.

일본의 퇴직연금은 노사합의에 의해 임의로 적용되며, 확정급부기업연금법 또는 확정각출연금법에 근거하여 DB형 또는 DC형으로 운영된다. 2022년 기준, 1천 728만 명 퇴직연금 가입자 중 52.7%가 DB형에, 46.6%가 DC형에 가입한 상태이다. 또한 적립금 잔액 기준으로 DB형 가입자의 비중이 DC형보다 더 높은 66.6%에 달한다. 즉, 가입자 수 면에서는 DB형과 DC형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적립금 잔액 면에서는 DB형이 일본 퇴직연금의 주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DB형 적립금이 DC형보다 큰 것은 2012년에 폐지된 적격퇴직연금으로부터 전환해 온 사업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적격퇴직연금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많았던 것은 적격퇴직연금이 DB형의 속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와 유사한 iDeCo가 운영되고 있다.

43) 적격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신탁계약 및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연금수리 등의 적격요건을 만족하면 급여지급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임

44) 후생연금기금제도는 국가에 납입하던 후생연금보험을 기업의 퇴직급여와 함께 운영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의 운영 주체가 후생연금기금임

〈표 IV-16〉 일본 퇴직연금 유형별 규모(2022년 기준)

구분	가입자		잔액	
	명(만 명)	비중(%)	금액(조 엔)	비중(%)
후생연금기금	12	0.7	14.5	14.6
확정급여기업연금(DB형)	911	52.7	66.0	66.6
확정기여연금(DC형)	805	46.6	18.7	18.9
전체	1,728	100.0	99.1	100.0

주: 후생연금기금은 신규 가입 금지로 2023년에 폐지됨
 자료: 리츠나年金研究所(2023)

호주와 달리 일본 퇴직연금제도는 DB형이든 DC형이든 가입자에게 사망·장애 관련 보증을 단체보험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확정급부기업연금법⁴⁵⁾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시금, 노령연금 외에 장애급부금, 유족급부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급부금과 유족급부금은 선택적 제도이므로, 지급 조건과 내용은 각 사업장과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장애급부금, 유족급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일시금이나 노령연금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⁴⁶⁾

2) 퇴직연금 운용 방법과 보장보험

DB형 퇴직연금은 은퇴 시 가입자가 사전에 약속된 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운영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기업이 부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⁴⁷⁾ DB형 퇴직연금은 자산운용 방법으로 보험상품 구입을 허용하지 않으나, 회사가 기업복지 차원에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표 IV-17〉 일본 퇴직연금 유형별 보장성보험 구입 여부

구분	설명
DB형	• 자산운용 방법으로 보험상품 구입은 불허(기업복지 차원의 제공은 별도)
DC형	• 자산운용 방법으로 장애 및 사망관련 보험상품 구입 가능(확정각출연금법 제4절 제23조 4항 및 5항, 동법 4항) * 생명보험회사: 저축성보험(연금보험)만 제공 * 손해보험회사: 보장성보험(적립형 상해사망보장보험) 제공 가능

45) 일본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29조, 제29조의2

46) はくくみ企業年金ナビ 홈페이지

47) 労働金庫連合会 홈페이지

DC형 퇴직연금 자산운용은 확정각출연금법⁴⁸⁾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운영자산은 대부분 투자형 상품에 투자되고 일부 보험상품 구입에 활용되기도 한다. 일본 DC형 퇴직연금제도에는 호주와 같은 단체보험이 존재하지 않으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운용지시를 통해 장애 및 사망 관련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생명보험상품 및 손해보험상품으로 나뉠 수 있다. 이때 생명보험상품은 확정연금이나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 즉 저축성보험 상품에 국한되나, 손해보험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상해로 인한 사망 시 가입자에게 적립금의 1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적립형(저축성) 상해보험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에서 적립형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는 미즈이스미토모미해상(三井住友海上)⁴⁹⁾, 손보재팬(損保ジャパン)⁵⁰⁾, 아오이니세이토와(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⁵¹⁾, 도쿄해상일동화재(東京海上日動火災)⁵²⁾ 등이 있다. 한편,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는 생존을 지급 사유로 하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 사망보장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⁵³⁾

나. 퇴직연금 운용 현황

DB형 퇴직연금의 투자자산을 보면 생명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일반계정의 비중은 2013년 13.7%에서 2019년 18.7%까지 높아졌다가 그 이후 조금씩 하락해 2022년 17.3%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계정은 생명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계정을 의미하며, 대부분 저축성 보험상품이 해당되며 보장성 보험상품은 취급되지 않는다. 이는 DB형 퇴직연금의 특성상 퇴직 이전까지는 적립금의 운용과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를 위한 보장성 보험상품의 적용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의 근로자는 장애급부금, 유족급부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아니라 기업 복지 차원에서 제공된다.

48) 일본 확정각출연금법 제4절 제23조 4항 및 5항, 동법 4항

49) 三井住友海上, 企業型確定拠出年金(企業型DC)運用商品一覧

50) 損保ジャパン, 損保ジャパン・確定拠出年金用積立傷害保険・5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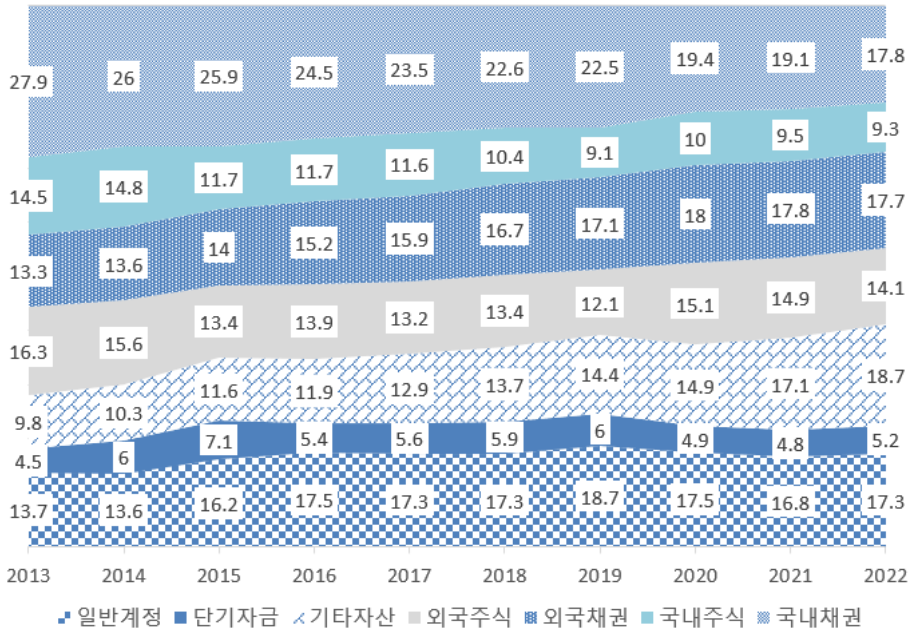
51) 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 積立傷害保険商品概要説明書

52) 野村證券株式会社, “運用の方法(企業型確定拠出年金)”, “東京海上日動のねんきん博士5年”

53) 일본 확정각출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그림 IV-2〉 일본 DB형 퇴직연금 운용자산 1), 2) 구성비 추이

(단위: %)



주: 1) 일반계정은 생명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하나의 통합계정이며 개인보험과 퇴직연금 자산 등이 포함됨
 일반계정에서는 원금과 일정 이율(보증이율)이 보장됨
 2) 기타자산은 대체자산, 전환사채, 대출 등 자산을 포함함

자료: 企業年金連合會 홈페이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상품 비중을 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4년 동안 투자(금전)신탁은 49.0%에서 59.8%로 증가한 반면, 예·적금 및 보험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기간 보험상품의 비중은 16.2%에서 11.4%로 4.8%p 하락하였다. 이 중 생명보험(저축성보험 등)의 비중은 10.3%에서 7.4%로, 손해보험상품(적립형 상해보험 보험 등)의 비중은 5.9%에서 4.0%로 하락하였다. 보험상품의 비중이 감소한 이유로는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해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⁵⁴⁾

54) 日本經濟新聞 기사(2016. 6. 10), “損保、積み立て型の販売停止・マイナス金利で運用困難”

〈표 IV-18〉 일본 DC형 퇴직연금의 투자상품 선택 추이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적금	34.4	36.1	31.7	29.4	28.3
보험상품	16.2	15.6	13.3	12.0	11.4
생명보험상품	10.3	9.9	8.5	7.8	7.4
손해보험상품	5.9	5.6	4.7	4.2	4.0
투자(금진)신탁	49.0	48.1	54.8	57.9	59.8
대기성자금	0.4	0.2	0.2	0.6	0.5

자료: 運営管理機関連絡協議会, “確定拠出年金統計資料(2021年3月末)”, “確定拠出年金統計資料(2023年3月末)”를 이용하여 작성함

2022년 기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령별 보험상품(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해당) 선택 상황을 보면 40대, 50대 및 60세 이상 가입자의 보험상품 선택 비중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가입자는 주로 5년납, 10년납 보험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일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보험상품 선택 상황(2022년)

(단위: 억 엔, %)

구분	적립금 잔액	구성비	납입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기타
전체	21,448	-	56.3	42.7	0.4	0.6	0.0
19세 미만	1	0.0	59.4	39.5	0.0	1.1	0.0
20대	343	1.6	63.0	36.5	0.0	0.5	0.0
30대	1,654	7.7	58.9	40.7	0.0	0.4	0.0
40대	5,162	24.1	52.5	47.1	0.0	0.4	0.0
50대	11,097	51.7	53.9	46.0	0.0	0.2	0.0
60세 이상	3,190	14.9	68.9	26.3	2.4	2.4	0.0

자료: 運営管理機関連絡協議会, “確定拠出年金統計資料(2023年3月末)”를 이용하여 작성함

2022년 기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령별 예·적금 선택 상황을 살펴보면 40대, 50대 및 60세 이상 가입자의 예·적금 선택 비중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가입자가 주로 3년 만기, 3년 만기, 4년 만기 예금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상품과 예·적금 선택 상황을 비교하면 60세 이상에서 보험상품 선택 비중은 14.9%로 예·적금 12.0%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일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예·적금 선택 상황(2022)

(단위: 억 엔, %)

구분	적립금 잔액	구성비	예·적금 기간					
			보통	1년	3년	5년	10년	기타
전체	53,296	-	0.1	32.6	22.5	41.7	2.5	0.6
19세 미만	5	0.0	0.2	36.5	18.3	40.9	2.1	2.0
20대	1,157	2.2	0.2	38.2	24.0	34.5	2.0	1.2
30대	4,936	9.3	0.1	37.3	25.4	34.2	2.2	0.8
40대	13,217	24.8	0.1	34.4	22.9	39.3	2.6	0.7
50대	27,612	51.8	0.1	30.1	21.7	44.9	2.6	0.6
60세 이상	6,370	12.0	0.1	34.9	22.4	40.1	2.1	0.5

자료: 運営管理機關連絡協議會, “確定拠出年金統計資料(2023年3月末)”를 이용하여 작성함

다. 시사점

호주와 달리 일본 퇴직연금제도는 DB형이든 DC형이든 가입자에게 사망·장애 관련 보증을 단체보험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DB형 퇴직연금을 규정하는 확정급부기업연금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시금, 노령연금 외에 장애급부금, 유족급부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노사합의를 통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망·장애 관련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을 저축성 생명보험 외에도 상해로 인한 사망·장애 관련 보증을 제공하는 손해보험(적립형 상해보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 저축성 손해보험에 투자하여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고 사망 관련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해 적립형 상해보험 등 원금보장형 투자상품의 선택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제II장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50·60대 고령자는 장수리스크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험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는데, 이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보험해지의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의 DC형 퇴직연금에서 적립금을 활용하여 보장성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허용한다면, 퇴직연금에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유족(사망보장) 및 장애 관련 보증을 받을 수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21〉 퇴직연금 자산의 보장성 보험상품 구입 가능성과 특징

구분	설명
보장성 보험상품 구입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회사: 저축성보험(연금보험)만 제공 • 손해보험회사: 보장성보험(적립형 상해보험) 제공 가능
보장성 보험상품 유형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 자산운용 방법으로 보험상품 구입은 불허 • DC형: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구입 가능 * 질병보험은 운용 방법에 포함되지 않음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형 퇴직연금의 보험상품 가입률: 11.4%(2022년 기준)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형 상해사망보장보험: 상해 사망 시 적립금의 110%
법규법	<p>확정각출형기업연금법, 확정급여형기업연금법</p>

1. 결론

그동안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은 수익률 제고에 지나칠 정도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원리금보장 운용 방식을 내실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 원리금보장상품에 보장성보험을 편입하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령층의 보험수요를 평가하였고,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살펴보았고,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나라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향후 장수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고령층의 수요 불충분은 유동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소득으로 인해 보험상품을 유지하기 어려워 해지하거나, 증가하는 장수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험가입이 필요함에도 가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방지되고 있다시피한 퇴직연금 자산이 상당하여 부족한 보험가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즉, 현재 원리금보장 자산운용 방법을 저축성보험만이 아니라 보장성보험까지 확대한다면, 노후준비와 관련된 보험의 해지를 줄일 수 있고, 퇴직 전에 노후준비를 강화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및 요양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를 하고 있다는 현실과 관련하여,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보험을 허용한다는 이러한 노후자산 누수는 방지될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현행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서 보장성보험이 배제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초고령사회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급여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목적을 노후생활보장⁵⁵⁾으로 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을 노후소득에 초점을 두는 제도로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현대 산업을 보면 하이브리

55) 퇴직급여법 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의됨

드 형태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자산 투자유형을 노후소득보장에 국한하기보다 건강보장을 포함한 노후생활보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2년 보장성보험이 운용 방법에서 제외된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한 평가 없이 퇴직연금제도의 투자수익률 제고 논의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투자수익률 제고가 요원한 현실에서, 원리금보장상품에 보장성보험을 편입할 경우 잠재수익률 관점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해 제3보험을 중심으로 한 고령층 대상 보장성보험은 매우 중요한 노후생활 재원일 것이다. 이에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보장성보험을 포함시키는 것이 소비자후생을 개선시키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호주, 미국, 일본의 경우 서로 다른 특성은 있지만, 보장성보험도 퇴직연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호주는 마이슈퍼 가입 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강제적으로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미국은 DB형 퇴직연금 내 의료저축계좌(401(h))를 통해 의료비 지출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기여금의 25%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DC형에서 사망보장을 제공하는 적립형 상해보험 형태로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V-1〉 주요국의 퇴직연금 자산의 보장성보험 편입 여부 및 특징

구분	호주	미국	일본
허용여부	허용 * 가입제한: 비활성계좌, 저연령, 저적립	허용 * DC형 적용안됨	허용 * DB형 적용안됨
제도유형	DC형/마이슈퍼 가입 시 (단체보험)	DB형/건강계좌(401(h))	DC형/손해보험 (적립형 상해보험)
보장범위 (기능)	사망(종신보험), 영구장래, 소득보상	의료비, 보장성보험(종신보험 등)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한도	사망보장보험에 권고 보험 가입금액이 존재	건강관련 비용(의료비, 보장성보험 등)으로 사용자 기여금의 25%까지 납부 가능	-

물론 이러한 해외사례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계약형 중심의 국내 제도에 신탁형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의 법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장성보험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구조와 세계 혜택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리스크 극복, 노후생활보장 강화,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용 방식으로 보장성보험을 편입할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에 보장성보험을 단계적으로 포함하여 퇴직연금이 단순한 노후소득보장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 포괄적인 노후 자산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보장성보험을 단계적으로 편입한다. 초기에는 사망·상해·재해 보험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이후 치매와 같은 질병 보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 사회의 건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후기고령층의 질병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퇴직연금 자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적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보장성보험 구입 재원으로 본인부담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상황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까지 확대한다. 퇴직연금 자산은 사용자부담(퇴직급여)과 본인부담으로 나뉘며, 본인부담분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DC형과 IRP 등에서 본인부담 적립금으로 보장성보험을 우선 구입하도록 허용하고, 제도가 정착된 후 사용자 부담분에도 보장성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본인부담분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자산 유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을 검증하는 접근 방식이다.

셋째, 퇴직연금을 종합적 노후 자산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을 단순한 노후 소득보장(노령연금) 자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장애(장애연금)와 유족(유족연금)의 생계까지 보장하는 종합적 노후 자산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장성보험의 편

입은 장애와 유족 연금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은 퇴직 소득뿐만 아니라 장애와 유족 소득보장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역시 이러한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노후생활보장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득보상보험과 종신보험을 도입해 장애인과 유족에 대한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시장 수익률에만 집중하여 보장성보험의 잠재수익률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단순한 시장 수익률 대신 잠재수익률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각각 퇴직연금의 역할을 다양화하고, 포괄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 강성호(2024), 「퇴직연금 적립금 추정과 연금화 정책」,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p. 17~19
- 강성호·김혜란(201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금융감독원(2013), 「호주 퇴직연금 제도 및 감독체계 관련 해외자료 출장 경과보고」
- 김규동(2024),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 김대환·손성동(2022), 「기금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생보업계 대응 방안」, 『용역보고서』, 생명보험협회
- 김대환·정남기(2017), 「독일 건강보험의 고령화적립금 연구와 정책적 시사점」, 『경상논총』, vol. 35(2), 한독경상학회, pp. 41~56.
- 김재현(2010),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증권사의 전략 방향」, 『연금시장리뷰』 6호, 현대증권
- 김진익(2020), 「미국, DC형 퇴직연금에 연금보험 편입활성화」,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 류건식·강성호(2017), 「근로자의 건강보장 가미형 퇴직연금 상품 니즈 및 과제」, 『고령화리뷰』, 보험연구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16),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경영보고서』, 보험연구원
- _____ (2022),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보험총서』, 보험연구원
- 류건식·김대환·이상우(2013),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 류건식·이상우(2009),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은행 자행 예금의 퇴직연금 운용 허용과 관련하여-」, 『KIRI리포트』 vol. 36, 보험연구원, pp. 2~12
- 미래에셋투자자와연금센터(2022), 『투자자와 연금』, autumn 2022 Vol. 08, p. 8

- 변혜원·손지영(2021), 「2020/202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MZ세대의 은퇴저축」,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p. 84
- 변혜원·오병국(2024),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정도」,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2023),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 생명보험협회(2023),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 _____ (2024),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p. 250
-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이경희(2018),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이상우(2012), 「일본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 厚生労働省(2012), “厚生年金基金の運用体制等に関する調査結果 概要版”
- _____ (2015), “厚生年金基金の解散等について”
- _____ (2018), “平成30年就労条件総合調査 結果の概況”
- _____ (2021), “厚生労働白書 2021”
- 企業年金連合会(2021. 12), “企業年金実態調査結果”
- りそな年金研究所(2021), “企業年金・iDeCo等の概況について”
- りそな銀行(2023), “りそな年金研究所”
- 運営管理機関連絡協議会, “確定拠出年金統計資料(2021年3月末)”
- _____, “確定拠出年金統計資料(2023年3月末)”
- PRI Association(2021), “年金制度とサステナビリティ”
- APRA(2020),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Statistics June 2004 to June 2019”
- ASFA(2024a), “Developments in insurance provided through superannuation”
- _____ (2024b), “Shining a spotlight on insurance in super”
- ASIC(2023), “Insurance in superannuation: Industry progress on delivering better

outcomes for members”, Report 760

Burton T. Beam, John J. McFadden(1998), “Employee Benefits”

KPIM(2017), “Review of Default Group Insurance in Superannuation”

USDOL(2023),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 Abstract of 2021 Form 5500 Annual Reports”, p. 9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701526)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1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https://pension.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prd/HP02020100.xml>)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1/71355?srchCtgy=1&curPage=100&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HthInsRvStatInfoTab19.do?docNo=03-035>)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

NPS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https://fund.nps.or.kr/jsppage/fund/mpc/mpc_03.jsp)

企業年金連合会 “企業年金に関する基本統計”(<https://www.pfa.or.jp/activity/tokei/nenkin/index.html>)

労働金庫連合会, “確定給付企業年金(DB)” (<https://www.rokinren.com/kigyonenkin-support/outline/db.html>)

はぐくみ企業年金ナビ, “確定給付企業年金(DB)の基礎知識とメリット/デメリット”

(<https://bpcor.jp/hagukumikikin/feature/retirement-allowance/4115/>)

Internal Revenue Service(IRS)(<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topics-hardship-distributions>)

moneysmart.gov.au, “Super investment options” (<https://moneysmart.gov.au/grow-your-super/super-investment-options>)

_____, “Insurance through super” (<https://moneysmart.gov.au/how-life-insurance-works/insurance-through-super>)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특별회원	₩150,000원	
개인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 저자약력

강성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이소양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lishaoyang@kiri.or.kr

임석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 박사 수료 / 연구원
E-mail : shlim@kiri.or.kr

연구보고서 2024-11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한 보장상품 가입 방안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93021-53-8
979-11-85691-50-3(세트)

(정가 10,000원)